

발간등록번호
73-6430000-000291-10



2013
계약심사 실무편람



청풍대교(올해의 토목구조물)



●●● 목 차 ●●●

1장 계약심사 개요 및 성과

- 1. 계약심사제도 개요 7
- 2. 계약심사 운영성과 11

2장 분야별 심사매뉴얼

- 1. 공사 원가심사 17
- 2. 용역 원가심사 30
- 3. 물품 원가심사 47
- 4. 설계변경 심사 60

3장 주요 심사사례

- 1. 공사분야 71
- 2. 용역분야 121
- 3. 물품분야 131
- 4. 설계변경 139
- 5. 시·군 주요심사 사례 147

4장 부록

-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55
- 2. 예정가격 작성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67
- 3.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207
- 4.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213
- 5. 계약심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219
-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223
- 7. 도내 공사용자재 생산업체 현황 247

제1장

계약심사 개요 및 성과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계약심사 운영성과



1 | 계약심사제도 개요

가. 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성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다.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라. 계약심사 대상범위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 ▣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의회사무처 ▣ 지방공기업 ▣ 출자 · 출연기관 (50%이상)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사·군 <u>종합공사</u> 추정금액 5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시 · 군 > ▣ 국 · 도비 보조사업 ▣ 국 · 도비 재배정사업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세

마. 계약심사 제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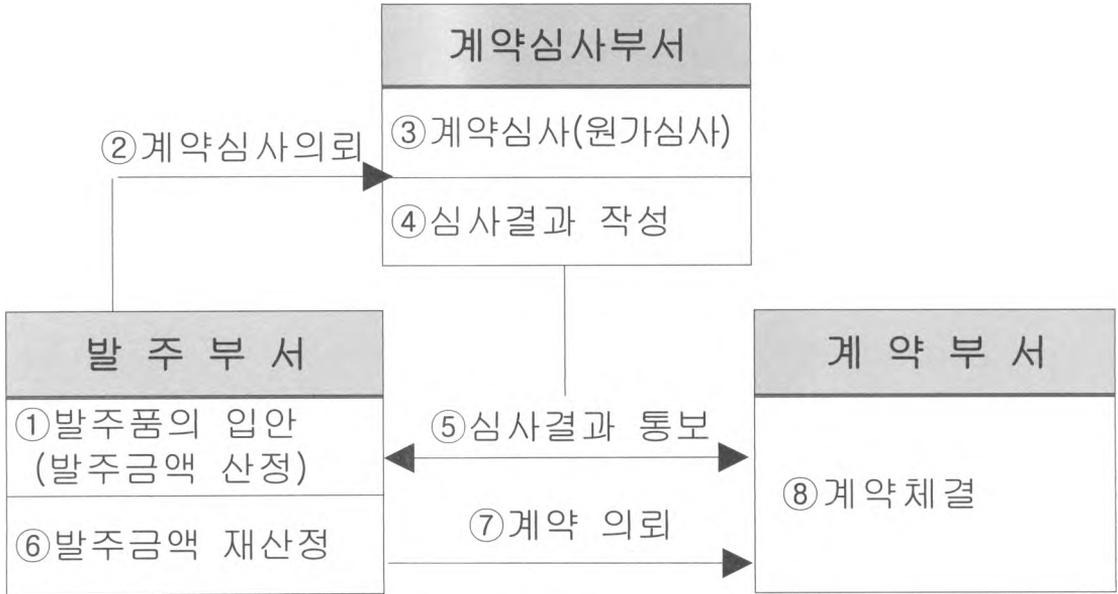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위 사항 외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사업은 심사제외 대상이 아님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

연번	분야	대상 사업명	심사제외 지정 사유	비고
1	물품	농,축,수산물 식자재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사행중
2	물품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
3	물품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조정율이 낮아 심사실익 없음	"
4	용역	행사용역	사업특성상 심사곤란	추가
5	물품	조달청 외자구매	최저가격 낙찰방식 및 환율적용	"
6	물품	소방헬기 및 부품구매	해외 특정제작자 제품	"
7	물품	유류(가스)구매	한국석유공사 매주가격 고시	"
8	물품	상품권, 종량제봉투, 예술품	조정율 낮아 심사실익 없음	"
9	물품	시험연구용 원자재(귀금속)	주기적 국제시세 반영 및 환율적용	"

바. 계약심사 처리절차

□ 계약심사 흐름도



□ 처리기한 : 10일

□ 업무처리 절차

- ① 심사요청서 접수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 ③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④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 ⑤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 ⑥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 ⑦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 ⑧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 ⑨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⑩ 심사실적 관리

2 계약심사 운영성과

가. 추진경과

- '08. 7월 : 계약심사팀 설치
- '08. 8월 :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공포
- '08. 9월 : 계약심사 업무개시(도 발주사업)
- '09. 7월 : 계약심사 확대(시·군·국·도비보조사업 포함)
- '11. 9월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 '11. 12월 : 계약심사 의무 시행

나. 추진실적 총괄

□ 연도별 심사실적 분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1,918건	1,973,080	1,863,579	109,501	5.5%
2008	47	13,694	12,801	893	6.5
2009	362	290,124	273,802	16,322	5.6
2010	493	484,390	455,909	28,481	5.9
2011	533	572,588	541,142	31,446	5.5
2012	483	612,283	579,924	32,359	5.3

□ 사업별 심사실적 분석('08년~'12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1,918건	1,973,080	1,863,579	109,501	5.5%
공사	890	1,668,224	1,575,694	92,530	5.5
용역	261	144,053	134,957	9,096	6.3
물품	767	160,802	152,927	7,875	4.9

다. 2012년도 심사실적

□ 사업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83건	612,283	579,924	32,359	5.3%
공 사	297	550,485	520,952	29,533	5.4
용 역	68	37,228	35,225	2,003	5.4
물 품	118	24,570	23,747	823	3.3

□ 기관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계	483건	612,283	579,924	32,359	5.3%	
도	소계	166	181,848	175,318	6,530	3.6%
	본청, 사업소	108	123,398	119,178	4,221	3.4
	공기업, 출연기관	58	58,450	56,140	2,309	4.0
시 · 군	317	430,435	404,606	25,829	6.0%	

라. 2012년 시군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시군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평가금액	절 감 액	절 감 율
청주시	111	38,902	38,424	478	1.23%
충주시	149	47,546	46,706	840	1.77%
제천시	76	21,721	20,500	1,221	5.62%
청원군	101	62,326	57,161	5,165	8.29%
보은군	16	3,655	3,568	87	2.38%
옥천군	53	12,662	12,008	654	5.17%
영동군	54	20,871	19,854	1,017	4.87%
증평군	41	7,459	7,092	367	4.92%
진천군	82	26,117	24,965	1,152	4.41%
괴산군	76	25,087	24,474	613	2.44%
음성군	78	27,041	25,900	1,141	4.22%
단양군	20	3,576	3,551	25	0.70%

제2장

분야별 심사매뉴얼

1. 공사 원가심사
2. 용역 원가심사
3. 물품 원가심사
4. 설계변경 심사



1 공사 원가심사

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여부,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 원가를 재 산출함은 물론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공사의 분류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기타공사 등으로 분류
 - ①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②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설비 등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③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④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⑤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등을 수리하는 공사
- ⑥ 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공사,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 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1-3 공사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검토 · 기계경비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 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전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추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3억원(시·군 5억원) 이상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 : 3억원 이상 ○ 심사요청서(서식 1)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신공법인 경우 관련자료 등 ○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파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 작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 ※ 참고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 참고기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참고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참고기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비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예 : 1.81%시 3,294천 원)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건축, 토목, 조경 등)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② 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정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 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 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 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③ 일위대가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실적공사비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울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④ 단가조사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 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가 적절한지 여부 ○ 단가적용 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지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공사)
기 타	○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 소요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절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항 목	검 토 내 용
<p>단가 적용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p>조달구매 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p>시중자재 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물가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견적처리 가능
<p>견적단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단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p>장비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가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

1-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토지리정보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미래창조과학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견적 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안정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 건설계약연구원(www.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조달연구원
- 한국지방계약학회

<예시>

공사 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 설 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 상 비					
안전점검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순 원 가				
	일 반 관 리 비				
	이 율				
	총 원 가				
	공 사 손 해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예시>

실적공사비 총괄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2 용역 원가심사



2-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용역원가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설계 내역서 등을 근거로 노무비 기준단가 적용 적정여부, 경비항목의 수량 및 단가 적용 적정여부, 불필요한 비목 포함여부, 재료비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여부, 설계서간 불일치 및 오류 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2-2 용역의 분류

-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 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 ①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②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③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3 용역심사 절차

①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원가계산서, 과업내역서 등 단가산출 적정성 검토 · 용역의 방법 및 기타 사항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2-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시·군 2억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추가 업무관련 자료 등 - 기타 참고자료(적용근거, 견적서 등) (누락시 보완요구)
내역화일 (엑셀문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서, 투입인원산출서, 적용분야의 연계 (연동체계) 여부, (미연동시 보완요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용역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1)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검토

①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여부 ○ 도 산하 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 적정여부 -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요율 적정여부

② 건설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 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 파악 및 서류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 파악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적정산정 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 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 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2) 산출내역 검토

① 산출내역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건에 맞는 품셈적용 여부 ○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 여부
단가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가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 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정보통신용역) ○ 견적가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 여부
공종별 물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 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노무량 적용상 내용 확인 (예 : 품셈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미반영 등)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등 오류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②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등 심사당시 발표된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시중물가지 단가와 비교)하였는지 여부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가 적용 시 2개 이상의 업체견적을 받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부가세 및 제경비 등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예)폐기물처리용역 등
작업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발생원과 물량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용역과 관련한 특별 검토사항 등

2-5 참고 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2) 기타 자료

- 조달청 표준용역 관련자료 및 기준(www.pps.go.kr)
-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각종 협회의 원가산정 공표자료(기획재정부 등록기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교육부 공고)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예시>

기술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 ~ 20 (개월)

(단위 : 원)

항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 노무비					
	소 계				
직 접 경 비					
	소 계				
제 경 비 ()%					
기 술 료 ()%					
공 급 가 액					
손 해 배 상 보 험 료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예시>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1. 인건비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연 근무수당	야 간 근무수당	휴 근 무수당	상 여 금	퇴 직 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도립대 교수 정규직 인건비는 제외,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자체 방침 적용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구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조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수		시간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원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급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요금액	
				1인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소요금액

구 분	인원수	1 인 당					누 계
		계	항공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 박 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수	연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 특수사양 등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계							

※ 읍셋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조달청양식)를 작성 첨부할 것.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 타	
		()	()	()		
		()	()	()		
계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8. 교통통신비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인당	누계	1회당	누계
계					

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다. 전신전화비

구분	사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10. 연구활동비 (도립대만 해당)

구분	인원	도립대 교수 인건비 (1인당)				소요금액 (인원*인건비*7%범위)
		계	기본급	상여금	퇴직총당금 및기타수당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계						

※ 도립대교수의 인건비는 원가(연구활동비)산출을 위한 계상만 하고 실제 지급은 하지 아니함

11. 일반관리비

순 원 가			일반관리비율 (%)	소요금액 (순원가*일반관리비율)
인 건 비	경 비	계		

◆ 인건비 중 도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는 도립대 교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계상만 하고 실제지급은 하지 아니하며, 충북개발연구원 정규직 인건비는 자체방침 적용

※ 제출서류

1. 연구원 명단 및 이력사항(학력, 경력 등) : 수의계약인 경우
2. 비목별 기초계산서 금액·수량 산출기준 근거자료(견적서 등)
3.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옵셋인쇄인 경우)
4. 도립대 교수 등 정규직 인건비 내역서(도립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3 물품 원가심사

3-1 물품의 개요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물품(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이 원칙

3-2 물품의 분류

- ① 제 조 : 특수규격품의 제작설치 및 수리 등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품제조를 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심사
- ② 완제품 : 완제품구매, 임차(부동산 제외) 등 물품 구매 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물품의 적정 구매가격을 심사
- ③ 인쇄물, 기획편집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의 사양에 따라 제조 원가를 산출하며, 기획 편집(디자인)요금의 별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준용하여 적정가를 산정함

3-3 물품구매 등 심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발주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파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서류배분
③ 심 사	· 사양서 검토, 가격조사(조달가, 견적가, 물가정보지 등) · 제조원가분석 검토, 계약방법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필요시 과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제조 : 일위대가서, 제조원가계산서 - 물품 및 인쇄 :산출금액 내역서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 심사요청서류 검토

항 목	검 토 내 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1건 구매 금액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심사제외 사업 -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 등
제출서류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기초조사서,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시방서, 사양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해당여부 확인 ○ 서류미비 시 발주부서에 보완 요청(유선 혹은 문서)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전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사양상의 의문사항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질의·과약

2) 심사

① 물품(제조)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달청 조사가격, 가격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견적가격, 출장조사가격 등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함 - 작업설·부산물 등 : 고재 발생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계상함 ○ 노 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제조부분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9.8%(당해년도 비율적용) ○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경비의 합계액 - 기타경비 : 예) 조달청 공사부분 비율 5% ○ 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노무비+경비)X비율] : 조달청 4.7%이내 적용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의 제조 7% 이내 ○ 이 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비율] : 제조·구매25% 이내

※ 제조물품을 설치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여부를 확인,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② 물품(완제품)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최저가격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지, 물가자료, 월간거래가격, 유통물가) - 출장 조사가격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총계집계 후 절감액 산출 - 특히, 농수산물 등 면세대상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확인

- 다품종 물품구매시 업체(업종) 등을 고려 품목별로 분리구매
 - 다품종 물품 구매 추진시 물품의 용도별 유사성, 판매처의 취급 전문성 및 자격 등을 간과하고 통합하여 일괄로 물품 가격을 조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발주부서는 업종별로 분리 발주되도록 사전협의
- 예1) 전기재료 · 프린터잉크 · 문구류 등 혼합구매
- 예2) 각종 시약류 · 과학기기류 등 혼합구매

③ 인쇄물 · 기획편집

항 목	검 토 내 용
인쇄물 규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의 가로x세로 규격을 캐드화면 4x6전지 및 국전지 규격에 시연하여 적정규격 산정 ※ 낱장인쇄물, 제본(스프링제본은 예외)을 요하는 책자 인쇄물 여부에 따라 규격 산정이 달라짐 (예: 12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국8절로 산정, 18절 규격은 제본하려면 16절로 산정)
용지단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이 적용 ※ 지류생산업체, 수입지 판매업체 고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님 - 국판(국전지)은 4x6전지 단가의 69.4% 적용 ※ 물가정보지는 4x6 전지 기준임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le 제공의 경우 책자 내지 면수에서 10% 감조정 - 조판료는 실규격 단가 적용 (예:12절인데 제본을 고려하여 국8절로 규격 산정한 경우 조판료는 실규격인 12절 단가 적용. 봉투의 경우 실조판량을 감안하여 조판단가 조정) - 조판할증 또는 감액요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조정 - 추가인쇄의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제외함 - 기획편집료(디자인)를 별도 지출할 경우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기획편집료에 포함되므로 산출항목에서 제외

항 목	검 토 내 용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대 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표지 4절, 내지 2절로 산정(국판은 국4절, 국2절) ※ 국2절, 국4절은 2절, 4절 인쇄판 단가의 69.4% 적용 - 인쇄물량, 날개표지, 양면인쇄 여부에 따라 2절 또는 전지 인쇄로 조정 - 표지는 용지소요량이 5연 이상 양면인쇄일 경우 필름출력과 인쇄판대를 2대로 산정
인쇄료 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증(두꺼운 후지, 박엽지, 베다인쇄, 별색인쇄 등), 감산 요인(국관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때, 인쇄통수는 용지소요량(연)×연당통수(2절 인쇄는 1,000통/4절 인쇄는 2,000통/전지인쇄는 500통)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카바 합지가공비는 규격과 부수에 따라 달라짐 - 봉투가공비는 규격봉투 여부와 물량에 따라 단가 상이 - 중철제본료는 면수, 규격에 따라 단가 상이함 - 양면테이프 가공비는 수작업이므로 물량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큼 - 리플릿 등 접지비는 특수접지 여부, 수량에 따라 다름 - 용지 재단비용은 조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표지날개 접지비는 제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단, 250g이상 두꺼운 후지는 오시가공비를 산정할 수 있음)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디자인비는 면당 거래단가×면수 또는 전자편집디자인공 노임×인원×작업일수 적용 - 번역, 감수료는 한국통번역센터 등 번역전문기관 견적이 적용 - 사진촬영, 일러스트 등은 컷수, 규모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교정쇄, 시안출력 등은 규격, 면수에 따른 평균거래가 적용

항 목	검 토 내 용
기타 산정 오류 검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읍셋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 부수가 작고 면수가 많은 책자의 경우 경인쇄와 읍셋인쇄의 산출금액의 차이가 큼(경인쇄가 훨씬 저렴) (단, 미색모조지에 양면1도 인쇄이지만 사진이 다량 삽입 되는 책자, 제본방법이 반양장인 경우는 읍셋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매트지, 라이온코트지, 아트지, 뉴플러스지 등은 경인쇄가 불가함에 유의)
일반관리비 와 이윤 요율 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 적정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셋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4%, 이윤 25%이내 ※ 이윤 계상시 재료비(용지대 등)제외 여부 확인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 기획편집료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적용

3-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등)

2)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예시>

수입원가계산서(수입완성품)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수입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 고
제 조	물 자 대	FOB가격			수입면장의 외화표시가격에 금융결 재원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운임(해상/항공)			유사실적요율
		보험료			유사실적요율
		소 계			CIF가격
원 가 비 용	수 입 부 대 비 용	신용장개설수수료			FOB가격 * 요율
		통관료			CIF가격 * 요율
		보세창고료			(CIF + 관세)* (기본요율 + 1일 할증 * 보관일수)
		하역료			하역요율
		국내운반비			국내운반요율
		소 계			
		일반관리비 ()%			(물자대+수입부대경비)*요율
		이 윤 ()%			(수입부대경비+일반관리비)*요율
수입제세		관세			물자대 * 관세율
		특별소비세			(물자대+관세) * 특소세율
		교육세			특소세액 * 교육세율
		소계			
		부 가 가 치 세			(물자대+수입부대비용+일반관리비 + 이윤+수입제세) * 부가세율
		총 계			

<예시>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_____ ◦ 수 량 : _____
 ◦ 규 격 : _____ ◦ 제조기간 : _____

비 목	구 분	단위	산 출 금 액			구성비	비고
			수 량	단 가	금 액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조 원 가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예시>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예시>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4 설계변경 심사



4-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4-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 2)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3)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4) “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6) “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3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시·군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 심사제외 대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4-4 설계변경심사 절차

<p>① 심사요청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계약)부서 → 심사부서(심사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p>② 심사요청서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내역화일 등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발주부서에 보완요구
<p>③ 심 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p>④ 심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또는 계장),
<p>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발주부서와 협의 (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p>⑥ 심사결과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p>⑦ 심사결과 최종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담당자 → 계약심사팀장 → 과장 또는 국장
<p>⑧ 심사 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4-5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발주부서 요청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2. 설계변경 물량 (수량)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 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4-6 심사결과

○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 재검토 사유명기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서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서식 설계변경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원가계산)

공사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공 사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사손해보험료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서식 설계변경심사-2-1>

심사결과 요약서(실적공사비)

공사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사손해보험료				
도급액				
관급자재비				
이설비				
총공사비				

<서식 설계변경심사 - 3>

주요심사내용 (예시)

공사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심사결과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재검토 사유명기

- 설계금액 : 천원(금회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제3장

주요 심사사례

1. 공사분야
2. 용역분야
3. 물품구매
4. 설계변경
5. 시·군 주요심사 사례





1. 공사분야 심사사례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503,300천원(도급액 : 5,805,800천원, 관급액 3,697,500천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4km, 교량 5개소, 붙임형블럭 A=28,221m², 자연석쌓기 A=16,630m²,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3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805,800	4,881,800	924,000	15.92%

□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간접노무비 9.5%→10.6%
- 2) 기타경비 7.3%→6.9%
- 3) 환경보전비 삭제
- 4) 하도급보증수수료 0.069%→0.070%
- 5) 일반관리비 5.5%→6.0%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철근 콘크리트깨기 30cm이상,미만 단가 조정
 - 고철공제 추가 $A=(2400-2300)\times 0.5=50\text{kg}/\text{m}^3$
 - 고철 $-460\text{kg}\times A=-460\text{kg}\times 50\text{kg}/\text{m}^3=-23,000\text{원}$
- 2) 아스팔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연성을 고려 최대치 적용 $Q=4.6\text{m}^3/\text{hr}\rightarrow Q=5.9\text{m}^3/\text{hr}$
- 3) 축제공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조정
 - 다짐 장비 램머→진동롤러(10ton)
- 4) 순성토운반(토사,L=10.0km) 단가 조정
 - 로더 작업효율 $E=0.60\rightarrow E=(0.75+0.60)/2=0.675$ (양호 평균값)
- 5) 축제공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조정
 - 다짐 장비 램머→진동롤러(0.7ton)
- 6) 합판거푸집 1회 단가 조정
 - 합판(내수) $12\text{t}\times 1220\times 2440\text{mm}$ 6,483원→7,740원
 - 각재(외송) 264,000원→330,480원
 - 일반못 768원→850원
 - 박리제 680원→828원
 - 합판거푸집 3회,4회,6회 단가 일괄 수정
- 7) 배수통관 거푸집 합판 3회→4회 조정
- 8) 유로폼(벽체) 단가 조정
 - 패널(600*1200) 19,350원→22,327원
 - 내부코너패널(220+200)*1200 14,000원→16,320원
 - 강관파이프 $\Phi 48.6\times 2.3\text{mm}$ 3,400원→3,045원
 - 웨지핀 57원→48원
 - 플랫폼타이 140원→120원

- 9) 친환경 식생호안블럭 단가 조정
- 특별인부 0.05인→0.017인
 - 보통인부 0.13인→0.007인
 - 백호우 0.7m³ 0.08hr→크레인 10톤 0.048hr
- 10) 부직포 설치 1,300원→870원
- 11) 하상보호공 사석부설 품 삭제
- 스톤매트리스 품내 돌부설 품 포함
- 12) 구조물공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조정
- 다짐 장비 램머→진동롤러(0.7ton)
- 13) 교면방수(도막식) 단가 조정-건축품셈 방수공사 준용
- 방수공 0.02인→0.13인
 - 보통인부 0.03인→0.07인
 - 연마공,도장공,특별인부 삭제
- 14) 가도공 가배수관 부설 단가 조정
- 커플링 밴드 수량 오류 조정 : 1EA→1m/8=0.125EA
- 15) 가도공 흙쌓기 및 헐기
- 다짐 장비 램머→진동롤러(10ton)
- 16)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 단가 조정 : 노무비+재료비→경비
- 17) 가설사무실,가설창고 단가 조정
- 손율 60개월→36개월 D=53%조정
 - 베이스찬넬 3,600원→3,060원
 - 외부판넬(벽) 41,800원→39,100원
 - 외부판넬(창문) 115,900원→85,000원
 - 외부판넬(철재문) 115,900원→112,200원
 - 판넬조인트 6,000원→6,120원
 - 톱 판넬 2,900원→2,550원

- 중도리 2,100원→1,785원
- 루우프 시트 8,400원→7,140원
- 내부판넬(벽) 37,000원→40,800원
- 천정판 8,800원→12,240원
- T-BAR 1,800원→1,275원

18) 시공상세도 작성비 단가 조정

- 노+경→경비성 항목처리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삭제
- ☞ 시방서내 구조물공만 시공상세도 수록, 부대시설물 가시설
시방서내 명시 추가

19) 시공 측량비 단가 조정 : 노+재→경비성 항목처리

주요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용역)- 원안심사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관급자재 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30,910천원(도급액 : 785,070천원, 관급액 145,804천원)
- 사업내용
 - 토공 A=3,611m³, 배수공 L=232m
 - 전석쌓기 A=480m², 식생옹벽블록 A=745m²
 - 아스콘포장 A=634m², 콘크리트포장 A=385m²,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90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85,070	686,070	99,000	12.61%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환경보전비 0.9%→0.3%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아스팔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연성을 고려 최대치 적용 Q=4.6m³/hr→Q=5.9m³/hr

- 2) 사토운반(사토장,L=15km) 단가 조정
 - 로더 작업효율 $E=0.60 \rightarrow E=(0.75+0.60)/2=0.675$ (양호 평균값)
 - 사토운반 평균속도 20km \rightarrow 35km
 - ☞ 내역서 연곡리 지역 사토운반거리 L=10km 표기 후 단산은 L=15km 사용 단산 수정
- 3) 사토운반(사토장,L=60m) 단가 조정
 - 로더 작업효율 $E=0.60 \rightarrow E=(0.75+0.60)/2=0.675$ (양호 평균값)
- 4) 합판거푸집 1회 단가 조정
 - 합판(내수)12t*1220*2440mm 8,902원 \rightarrow 7,740원
 - 각재(외송) 449,101원 \rightarrow 330,480원
 - 일반못 1,120원 \rightarrow 850원
 - 박리제 1,089원 \rightarrow 828원
 - 합판거푸집 3회,4회,6회 단가 일괄 수정
- 5) 유로폼(벽체) 단가 조정
 - 패널(600*1200) 26,900원 \rightarrow 22,327원
 - 내부코너패널(220+200)*1200 15,000원 \rightarrow 16,320원
 - 강관파이프 $\Phi 48.6 \times 2.3\text{mm}$ 3,333원 \rightarrow 3,045원
 - 웨지핀 60원 \rightarrow 48원
 - 플랫타이 140원 \rightarrow 120원
 - 박리제 1,100원 \rightarrow 600원
- 6) 왕벚나무 식재 단가 조정
 - 수목류 할증 수량 삭제 1.1 \rightarrow 1.0주
- 7) 자연석쌓기 단가 조정
 - 석공 0.18인 \rightarrow 0.14인
 - 보통인부 삭제
 - 굴삭기 0.7m³ 0.53hr \rightarrow 굴삭기 0.6m³ 0.43hr
 - 온양석 관급처리 및 단위 수량 산출 명시(공극율 30% 적용)

8) 연결 식생옹벽 설치 단가 조정

- 특별인부 0.06인→0.04인
- 보통인부 0.132인→ $0.049*2=0.098$ 인
- 크레인 10톤 0.34hr→ $0.12*2=0.24$ hr
- 사이목 식재 수량 및 종류 수량,내역서 명시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관급자재 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950,000천원(도금액 751,020천원, 관금액 198,980천원)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L=0.86km, B=8.0m
 - 토공 : 흙각기 43,287m³, 흙쌓기 12,741m³, 순성토 10,303m³
 - 구조물공 : L형측구 1,580m, 횡배수관 45m, 식생옹벽설치 364m²
 - 포장공 : 표층(t=5cm) 55a, 기층(t=10cm) 55a,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18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51,020	656,500	94,520	12.59%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간접노무비 10.6%→9.9%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1.81%+3,294천원
 - 3) 기타경비 6.9%→6.3%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철근 콘크리트캐기 30cm이상 단가 조정
 - 치출(0.7m³) 252,000원→223,000원
 - 고철공제 추가 $A=(2400-2300) \times 0.5=50\text{kg}/\text{m}^3$
고철 $-460\text{kg} \times A=-460\text{kg} \times 50\text{kg}/\text{m}^3 = -23,000\text{원}$
- 2) 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포장캐기 치출 단가 조정
 - 치출(0.7m³) 252,000원→223,000원
- 3) 순성토운반(자동덮개,L=4.0km) 단가 조정
 - 적재 로더 $E=0.60 \rightarrow (0.75+0.6)/2=0.675$
 - 덤프운반 $V=20\text{km} \rightarrow V=30\text{km}$
- 4) 토공 되메우기 및 다짐 장비 단가 조정(어떤 공종?)
 - 다짐 장비 조정 : 램머→진동롤러10ton
- 5) 규준틀 설치 수량 재산출
 - 비탈 : 직선부,곡선 반경 300이상 20m 간격
곡선반경 300m이하 10m
 - 수평 : 100m간격
 - 현장 여건내 한쪽은 절개지 감안 수량 산출
- 6) 전석쌓기 단가 조정 : 12년 개정 품 적용
- 7) 생태식생옹벽 블록 단가 조정(토목 6-8 중량구조물 품 적용)
 - 특별인부 0.05인→0.04인
 - 보통인부 0.13인→0.098인
 - 굴삭기 0.7m³ 0.23hr→크레인10ton 0.24hr
- 8) 집수정, 도수로 거푸집 조정 : 소형 4회→합판거푸집 6회
- 9) 가드레일 관급처리 : 설치품만 계상
- 10) 골재운반 비목 조정 : 노+재+경→경비 조정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관급자재 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 복원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862,690천원(도금액 3,454,210천원, 관금액 408,480천원)
- 사업내용
 - 생태축 터널 L=46m
 - 흙각기 1,130m³, 흙쌓기 27,725m³, 순성토 19,235m³
 - 프리캐스트 터널 L=46m
 - 아스콘 포장 1,664m², 교목류 식재 56주
 - 관목류 식재 4,330주, 초화류 34,720본,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62,690	3,461,510	401,180	10.39%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하도급지급 보증 수수료 순공사원가 경비성 항목 조정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순성토 운반 단가 조정
 - 덤프운반 속도 V=20km→V=30km ⇨ 2차로 교외 포장 도로 적용

2) MS Nail 제작 및 설치 단가 조정

- 철근 단위 중량 : 0.051→0.0499 조정
- 철근공 0.01414인→0.01479인
- 보통인부 0.00771인→0.00699인

3) 구조물 터파기(육상발파암) 단가 조정

- $Q=2.6\text{m}^3/\text{hr}\rightarrow Q=(5+3.4+2.6)/3=3.67\text{m}^3/\text{hr}$

☞ 시공형태가 지반 이하 또는 터파기라 하더라도 기계가 굴착개소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때에는 파쇄암 적용 (들어내기→ 터파기품적용)

4) 구조물공 토공 뒷채움 잡석 단가조정

- 다짐장비 램머→타이어 롤러

☞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않고 부설장비가 굴삭기 0.7m³ 임을 감안하여 다짐장비 조정

5) PC부재 제작 및 운반 비목 조정 : 경비→재료비

☞ 운반비와 재료가 같이 단가 구성내 있을 때에는 재료비로 산정

6) 보강토옹벽 뒷채움잡석 단가 조정

- 다짐 장비 램머→진동식 롤러(0.7ton)

7) Earth Bolt 천공 단가 조정

- 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8) 시종점 출입구 마감공사 비목 조정 : 경비→재료비

9) 한전주 이설 삭제 (발주처 부담 사항)

10) 지장물이설 단가 조정 : 보통인부 3인→1인

11) 골재운반 비목 조정 : 노+재+경→경비

12) 보강토 사급자재 관급처리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대상

3. 수량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가설사무실 컨테이너→조립식 가설사무실

○○○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917,317천원
(도급액 1,135,486천원, 관급액 667,045천원, 폐기물 114,840천원)
- 사업내용
 - 호안공 : 자연석 쌓기 A=3,790m², 식생매트 A=8,533m²
 - 구조물공 : 암거 3개소
 - 포장공 : 아스콘포장 917m², 콘크리트포장 5,735m²
- 사업기간 : 360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35,486	995,414	140,072	12.34%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거적덮기 단가 조정 : 미시공자재 매트고정판 삭제
 - 2) 철근콘크리트깨기(30cm)이상 단가 조정(깨기 관련 치출값 일괄 적용)
 - 치출 0.7m³ 252,000원→223,000원
 - 고철대 450원→경량B 460원
 - 3) 사토운반(토사) 단가 조정
 - 로더 작업효율 E=0.60→E=(0.75+0.60)/2=0.675 (양호 평균값)

- 상기 사항에 따라 덤프트럭 E_s 값 0.55→0.675 조정

☞ 타이어식 로더의 적용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파쇄암 이외의 토질 적재시 현장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함.

4) 석출혈기 단가 조정

- 대형브레이크+0.7m³ $Q=(3.3+5.9)/2→5.9$ 최대값 적용

- 치출 0.7m³ 252,000원→223,000원

5) 식생매트 조립 및 설치 단가 조정

- 토목품셈 13-3 식생매트 품 준용

6) 자연석깔기 품 조정 : 깔기 80%→50% 조정

7) 구조물공 암거 콘크리트타설 단가 조정 : 펌프카 타설 (버림제외)

8) 구조물공 암거 거푸집 단가 조정 : 3회→유로폼

9) 교통안전관리시설 단가 조정

- PE드럼 손울 적용 12개월 $D=24\%$ 적용(품셈 재생플라스틱 준용)

10) 보조기층,선택층,잡석 운반 비목 조정 : 노+재+경→경비

11) 유로폼(벽체) 단가 조정

- 패널(600*1200) 22,900원→22,327원

- 내부코너패널(220+200)*1200 16,500원→16,320원

- 웨지핀 57원→48원, 플랫타이 140원→120원

- 강관파이프 3,433원→3,045원, 박리제 750원→600원

12) 아스팔트방수 단가 조정

- 방수공 0.22인→0.05인+0.01인+0.06인=0.12인

- 보통인부 0.10인→0.02인+0.01인+0.03인=0.06인

13) 시공이음면 정리 단가 조정

- 건축품셈 6-1-4 콘크리트 치핑 기계품 준용

14) 콘크리트포장 및 양생 단가 조정

- 와이어메쉬 #6-100×100 4,240원→3,816원

2. 수량산출서 조정

1) 조경석 단위 수량 조정 : 1.58ton→1.30ton

○○○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681,000천원(도급액 2,148,290천원, 관급액 532,710천원)
- 사업내용
 - 사면보강 : A=18,807m², 산마루측구 121m
 - 억지말뚝 118개소, Soil-nailing 761공, 수평배수공 76공,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12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148,290	1,790,760	357,530	16.64%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환경보전비 조정 : 0.3%→0.8%(기타 토목)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노임단가 2012년 하반기 조정
 - 2) 원지반 식생 정착공 공법 조정
 - 현장여건에 따라 리핑암 녹생토, 토사구간 거적덮기 조정
 - 3) 자연석붙임(30*40*50) 단가 조정
 - 백호우 0.6m³ 0.33hr→0.25hr(괘돌, 뒷길이45적용)

- 4) 스틸그레이팅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5) 강관파일 천공(토사,암) 및 강관파일 항타비 수량 조절
- 파일 캡 콘크리트(H=1.2m) 매입 파일 수량 공제
- 6) Soil-nailing(L=6.0m,8.0m) 단가 일괄 변경
- ① 토사 시간당 천공 조정 : 3.05m/hr→5.50m/hr
 풍화암 시간당 천공 조정 : 3.38m/hr→6.10m/hr
 연암 시간당 천공 조정 : 2.85m/hr→5.14m/hr
- ② 토사 천공 인건비 조정
 - 중급기술자 0.036인→초급기술자 0.033인
 - 보링공 0.106인→0.098인
 - 특별인부 0.071인→0.063인
- ③ 풍화암 천공 인건비 조정
 - 중급기술자 0.029인→초급기술자 0.027인
 - 보링공 0.087인→0.080인
 - 특별인부 0.058인→0.051인
- ④ 연암 천공 인건비 조정
 - 중급기술자 0.036인→초급기술자 0.033인
 - 보링공 0.103인→0.095인
 - 특별인부 0.069인→0.061인
- ⑤ Nail 설치 및 제작 조정
 - 특별인부, 보통인부 산정식 D=29mm 철근 6m 길이에 대한
 중량 산출 후 산정 (폼셈 단위 ton당)
- ⑥ 그라우팅 설치 단가 조정
 - 중급기능사 0.98인→중급기술자 0.88인
 - 특별인부 1.33인→1.20인
 - 보통인부 1.36인→1.22인

- 7) Nail 그라우팅 단가(L=6.0m,8.0m) 중복으로 삭제
- 8) Soil-nail 지압판 단가 조정
 - 라이너 스크류 7,000원→3,800원
- 9) 토사천공(D105mm/75mm) 단가 조정
 - 천공속도 조정
 - 토사 시간당 천공 조정 : 4.9m/hr→5.50m/hr
 - 풍화암 시간당 천공 조정 : 4.48m/hr→6.10m/hr
 - 연암 시간당 천공 조정 : 4.06m/hr→5.14m/hr
 - 보통암 시간당 천공 조정 : 3.50m/hr→4.49m/hr
 - 경암 시간당 천공 조정 : 3.08m/hr→3.71m/hr
 - 기계시공 작업능력 Q=4.9m/hr→5.5m/hr
 - 중급기술자 0.033인→초급기술자 0.033인
 - 보링공 0.097인→0.098인
 - 특별인부 0.065인→0.063인
- 10) 연암 천공(D105mm/75mm) 단가 조정
 - 천공속도 조정
 - 토사 시간당 천공 조정 : 4.9m/hr→5.50m/hr
 - 풍화암 시간당 천공 조정 : 4.48m/hr→6.10m/hr
 - 연암 시간당 천공 조정 : 4.06m/hr→5.14m/hr
 - 보통암 시간당 천공 조정 : 3.50m/hr→4.49m/hr
 - 경암 시간당 천공 조정 : 3.08m/hr→3.71m/hr
 - 기계시공 작업능력 Q=4.06m/hr→5.14m/hr
 - 중급기술자 0.033인→초급기술자 0.033인
 - 보링공 0.097인→0.095인
 - 특별인부 0.065인→0.061인
- 11) 소단 측구 및 배수로 콘크리트타설→펌프카 타설로 일괄 조정

12) H-PILE 천공(토사) 단가 조정

- 보링공 0.08인→0.055인
- 특별인부 0.08인→0.055인
- 보통인부 0.16인→0.11인
- 1시간 작업능력 재산정

$$\rightarrow 0.055/2=0.0275\text{인}/\text{m}, 1/0.0275=36.36\text{m}$$

$$1\text{시간 작업량 } 3.13\text{m}/\text{hr}\rightarrow 36.36\text{m}/8\text{hr}=4.545\text{m}/\text{hr}$$

13) H-PILE 천공(연암) 단가 조정

- 보링공 0.43인→0.301인
- 특별인부 0.43인→0.301인
- 보통인부 0.86인→0.602인
- 1시간 작업능력 재산정

$$\rightarrow 0.301/2=0.151\text{인}/\text{m}, 1/0.151=6.62\text{m}$$

$$1\text{시간 작업량 } 0.57\text{m}/\text{hr}\rightarrow 6.62\text{m}/8\text{hr}=0.828\text{m}/\text{hr}$$

14) 토류판(흙막이판)설치 해체 단가 조정

- 판재 568,860원/ m^3 →330,750원/ m^3
- 형틀목공 0.082인→0.029인
- 보통인부 0.154인→0.077인
- 철거비(설치비 80%) 산정 노무비 재산출 산정

15) 가시설 강재손료 조정

- 고재단가 460원/kg→460,000원/ton

16) 자연석 2목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교 보수보강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88,776천 원(도급액 384,780천원, 관급액 3,996천원)
- 사업내용 : 슬래브 보강 1,188m
 - 보수공 단면복구 507m², 부식제거 및 도장 30m², 보강판 제거 6ea
 - 포장공 : 교면 방수 및 재포장 443m²
 - 배수공 : 차수덮개 10ea, 배수구설치 12ea, 유공관설치 125m,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120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4,780	364,903	19,877	5.17%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2012년 하반기 유류단가 적용
 - 유류대 :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 적용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
 - 유류 및 환율의 변동은 전(前)기준 대비 ±3%이상인 경우 변경함

2) COSREM-GP400압착보강 단가 조정

- 토목품셈 6-1-8-4 교량상판 철판접착공 준용
- 미장공 0.09인→1.0인
- 도배공 0.161인→도장공 0.07인
- 보통인부 0.07인→0.05인
- 잡재료 추가(재료비의 5%)
- 기구손료 인건비 2.5%→2%

3) 단면복구 단가 일괄 조정

- 토목품셈 6-1-8-3 콘크리트 균열보수 준용
- 미장공→특별인부, 특별인부→보통인부

4) 교면방수(도막) 단가 조정

- 바탕처리,프라이어바름(건축품셈 13-1~2),도막방수(토목품셈 6-7-4)
- 방수공 : 0.05인+0.01인+0.06인=0.12인
- 보통인부 : 0.02인+0.01인+0.03인=0.06인

5) 중기운반 단가 비목조정 : 노+재+경→경비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하천 하도준설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0,276천원 (도금액 400,276천원)
- 사업내용
 - 토 공 : 흙깎기 $V = 46,964\text{m}^3$, 사토 $V = 46,964\text{m}^3$,
 - 부대공 : 물막이 $L=422\text{m}$, 공사전입가도 1식
- 사업기간 : 40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0,276	356,797	43,479	10.86%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제외(전문공사 발주대상)
- 2) 이윤 조정 : 10.79%→15%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1) 흙깎기 단가 조정

- 작업효율 $E=0.45 \rightarrow 0.80-0.1-0.05=0.65$

☞ 가물막이 설치에 따른 유수 배제 및 작업현장이 넓고, 하향구배 등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

2) 사토운반 단가 조정

- 적사 타이어 로더 작업효율 E=0.6→0.75(양호,모래 사질토)
 - ☞ 타이어식 로더의 적용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파쇄암 이외의 토질 적재시 현장조건은 양호로 함.
- 운반 덤프 적재기계 Eo 수정 적용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관급자재 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 이착륙장 조성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899,000천원(도급액 794,000천원, 관급액 1,105,000천원)
- 사업내용
 - 건축물공 1식
 - 강관파일공 10본 (L=50m)
 -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94,000	463,000	331,000	41.69%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1) 산업안전관리비 산정 조정

- ① (재+직노+도급자관급/1.1)×율 ②(재+직노)×율×1.2중 작은값 적용
- 현장설치도 관급자관급(폰튼) 및 수수료 제외하여 산출

2) 환경보전비 요율 조정 : 0.3%→0.8%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건축 구조물 제작(제24호표) 단가 조정
 - 구조용각형강관(흑관), STS 사각관 설치 단가는 기성품을 절단 용접 설치하는 것으로 잡철물제작(간단)→잡철물 설치(간단)
- 2) 본체 제작, 창호, 전기설치, 기기, 기타 노무비 산출근거 첨부
 - 품셈내 계상 가능한 작업반장이외는 적용 삭제
- 3) 보강밴드($\phi 1040 \times 300 \times 12T$) 단가 조정
 - 열연강관 설치관련한 잡철물제작및설치 품을 기계품셈 1-2-4 강관 절단, 1-2-5 강관용접품으로 수량산출서, 대가 적용
 - ☞ 잡철물제작 및 설치 품은 국부적인 소량의 수량 산출이 곤란한 철물에 적용
- 4) 강관파일 육상이음 단가 조정
 - 3번 항목 동일 적용
- 5) 강관파일 속채움 수량 및 단가 조정
 - 강관파일 속채움 콘크리트 규격 변경 25-18-12→25-21-08
 - 강관파일 속채움 콘크리트 수량 오류 조정 : $792m^3 \rightarrow 156m^3$
 - 콘크리트 양생 품 제외(현장 여건상 적용 불가)
- 6) 초음파 탐상 검사 비목 조정 : 재료비→경비
- 7) 레미콘(25-18-12) $792.67m^3$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8) 강관파일공(리브)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단가 조정
 - 강관파일 용접 리브→콘크리트 철근 배치 조정
 - ☞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재 용접에 의한 용해
- 9) 부유표지판 제작 및 설치 단가 조정
 - 철거품 제외(현장 시공 과정상 불필요 공정)
- 10) 연결프레임 제작 및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간단)→잡철물설치(간단) 조정

□ 공법 관련 의견사항

- 강관파일에 의한 폰툰 지지 방식은 최고수위 145m, 평수위 123m, 최저수위 110m로 최/저 차이가 35m로 강관파일 10개 가 평시 20m이상 솟은 상태로 경관상 문제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강관파일 천공을 위한 바지선이 누락은 천공장비의 중량에 따른 바지선 규격(톤수),바지선 이동 경로(내륙 출발~ 도착)에 대한 중량 초과시 운행제한차량허가사항, 지장물 이설 등 면밀한 검토서가 반영되지 않아 내역 반영 곤란 (청풍대교 가설공사 참조)
- 공법 변경이나 공정 추가에 따른 사항은 재심사 요구 가능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습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22,800천원(도급액 627,709천원, 관급액 495,091천원)
- 사업내용
 - 토 공 : 표토제거 172.0m³, 사토운반(토사) 649m³
 - 식재공 : 주목외 7종 51주, 남천외 9종 4,135주
 - 시설물공 : 목교 W2000xL22m, 수변데크 : A = 298m²
 데크로드(1)W2000xL70.0m, 데크로드(2) W2000xL32.5m
 인공식물섬 토피아리 : A = 122m²x5EA, 12m²x4EA
 - 포 장 공 : 오톤 보수성 포 W2000xL=116.4m(A=350.0m²)
 쇠석포장(주차장) A= 520m², 우드칩포장 A= 185m²
 포장 경계석 (150X250X1000) : 102m
- 사업기간 : 270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27,709	439,739	187,970	29.95%

□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1) 산업안전관리비 오류 조정

- ① (재+직노+도급자관급/1.1)×율 ②(재+직노)×율×1.2중 작은값 적용

- 현장설치도 관급자 관급(인공식물섬, 보수성포장, 안내판 등) 및 수수료 제외하여 산출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1) 떼붙임 (줄떼) 단가 일괄 조정

- 재료비(0.21*0.21) 11매×270원×1.1=6,735원/3=2,245원
- 떼붙임(4.0+5.0)/100=0.045인×보통인부=3,633원

2) 목교 단가 일괄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품 분리 적용 (데크상판, 난간일괄적용)

①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적용 품목

-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보강 리브, 웨브

② 잡철물 설치 적용 품목(간단 100% 적용) : 장선, 난간 각재

☞ 아연도 각관은 공장 기성품으로, 현장에서 절단하여 용접 설치하는 것으로, 제작 품은 제외토록 함.

→ 보행데크 수량산출서 아연도 각관(측판틀, 장선) 잡철물 제작 설치 포함으로 잡철물설치(간단)으로 조정

③ 철골 가공조립 및 철골세우기 적용 : 가로보, 세로보

- 건축품셈 7-1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 60톤미만 7.45인×0.8=5.96인(철골공), 작업난이도는 조립공장, 창고등으로 가공부재가 적은 구조의 최소치

④ 아치형에 따른 철골 가공(벤딩)비 누락시 경비성 반영

⑤ 데크설치 조정 (건축품셈 12-3-2 마루널갈기 준용)

- 건축목공 0.161인→0.09인
- 보통인부 0.069인→0.02인

3) 수변데크 단가 일괄 조정

- 2번 항목 동일 적용하며, 철골 세우기 품 적용

4) 데크로드 1, 2번 단가 일괄 조정

- 2번 항목 동일 적용하며, 철골 세우기 품 적용

5) 자연석쌓기 수량 조정

- 조경석 12목 600*700*850을 2m로 쌓을시 체적은
 $2.4\text{m} \times 0.7(\text{공극율}) \times 0.85(\text{뒷길이}) \times 2.65 = 3.15\text{ton} \times 1.05 = 3.78\text{ton}$
- 자연석 수량 4.033ton → 3.78ton 조정

6) 낚시금지 안내판 단가 조정

- 낚시금지안내판 1식 견적가 일위대가 산출 및 조정
- 안내판 설치 중량 구조물 설치품 제외

7) 사각정가 1식 견적가 일위대가 산출 및 조정

8) 로프난간 지주 방부목 자재 단가 비교 조정

① 유통물가 12월호 86p(방부원주목_낙엽송)

- 방부원주목 D60, D80 1,909,700원/㎡, D120 1,306,400원/㎡
- 방부원주목 $\Phi 120 (3.14 \times 0.12^2) / 4 = 0.0113\text{m}^3 \times 1,306,400\text{원} = 14,762\text{원}$
- 방부원주목 $\Phi 80 (3.14 \times 0.08^2) / 4 = 0.005024\text{m}^3 \times 1,909,700\text{원} = 9,594\text{원}$

② 물가정보지 12월호 141p(미송원형가공목재)

- 3600*200*200이하 1재 6,200원
- 방부원주목 $\Phi 120 (3.14 \times 0.12^2) / 4 = 0.0113\text{m}^3 \times 299 = 3.38\text{재}$
 $6,200\text{원} \times 3.38\text{재} = 20,956\text{원}$
- 방부원주목 $\Phi 80 (3.14 \times 0.08^2) / 4 = 0.005024\text{m}^3 \times 299 = 1.50\text{재}$
 $6,200\text{원} \times 1.50\text{재} = 9,300\text{원}$

∴ 로프난간 지주목 43,870원 → 14,762원 × 1.35 = 19,928원

9) 원주목 경계 일위대가 조정

- 수량 산출 조정 : $\Phi 80 * L400 0.027\text{m}^3 \rightarrow (3.14 \times 0.08^2) / 4 = 0.005024\text{m}^3$
 1m당 12개 설치로 수량 조정
- 목재가공조립비 제외 후 연필각기 EA 1,000원 반영(물가정보지)

□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교 가설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838,400천원
(도금액 2,337,900천원, 관금액 1,125,500천원, MSP거더 2,375,000천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3m B=16m~21m
 - 도로부 L=92m
 - 교량부 L=111m, B=16m~21m
 - 접속도로 L=160m
- 사업기간 : 365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337,900	1,882,800	455,100	19.47%

심사착안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여부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서 요율 조정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조정

- (재+직노)1.81%×1.2+3,294천원→[(재+직노)1.81%+3,294천원]×1.2
- 현장설치도 관급자관급 제외하여 a,b값 재검토

2. 단가산출서 조정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1) 철근콘크리트깨기 30cm이상,미만 단가 조정
 - 고철 단가 380원→430원
- 2) 오수공 오수관 하상보호공 단가 및 수량 조정
 - 수량 산출시 공극율 30% 적용 : $330\text{m}^2 \rightarrow 330 \times 0.7 = 231\text{m}^2$
 - 하상바닥 설치 고려 전석쌓기 단가 50% 적용
- 3) 호안공 계단블럭 설치 단가 재산출 : 블럭 개당 중량 표시후 중량 구조물 설치품 적용
 - 관급자재 생산 중단 제품으로 타제품으로 조정
- 4) 교량공 토공 수량 일괄 조정
 - 교대 전면측 원지반 이상 흙깎기, 이하는 터파기 적용
- 5) 교량공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조정
 - 다짐 장비 램머→진동롤러 0.7ton
 - ☞ 현장 여건에 맞는 다짐 장비로 선정 적용
- 6) PP마대 쌓기 및 헐기→톤마대쌓기로 조정
- 7) 세굴방지공 수량 및 단가 조정
 - 2번 사항 공통 적용
- 8) 토사천공 오거 단가 일괄 조정
 - 토목품셈 5-10 매입말뚝공법(SIP) 단가 준용
 - 파일길이에 따른 장비조합 적정 검토, 토질계수에 따른 굴착시간 적정 산출하여 적용
- 9) 풍화암 천공 단가 제외
 - 토사 굴착 후 암반 상단 파일 향타 고정으로 암천공 제외
- 10) 강관말뚝 두부 정리 및 선단보강 단가 조정
 - 두부정리 용접공 0.72인→0.36인
 - 두부정리 보통인부 0.47인→0.21인
 - 두부보강 잡철물제작 및 설치 보통→간단
- 11) 말뚝 그라우팅 제외- 9번항목 장비 및 인력품 포함

- 12) 강관파일항타 수량 재산출
 - 수량 산출서내 매입말뚝 공법 적용 항타비 제외
 - 암반 굴착 고려 T4 천공 적용 검토
- 13) 목재 동바리 1회 단가 조정(국도설계실무요령 준용)
 - 각재 미송 426,000원→외송 330,480원
 - 형틀목공 0.05인, 비계공 0.1인, 보통인부 0.25인
- 14) 낙하물 방지 제외
 - 산업안전관리비 포함으로 제외(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
- 15) 벽체 스페이서 단가 조정 : 16개→8개(수량 산출 중복)
- 16) 아스팔트 방수2회 단가 조정 : 2회→1회 (2겹 방수)
- 17) 앵커설치 단가 조정
 - PC강선 $\Phi 12.7\text{mm}$ 1,710원→1,350원(가격정보)
 - 강선제작 노무비 $L=17.5\text{m}\rightarrow 16\text{m}$ 조정(여유장 제외)
 - PC콘 33,600원→10,000원(물가정보)
- 18) 가시설 강재손료 6개월→3개월 조정
- 19) LMC포장 일위대가내 포함된 도로경계석 설치 중복으로 제외
- 20) 차선도색 융착식 단가 조정 : 백색도료 4,400원→2,650원
- 21) 관급자재대 교량받침, 신축이음 현장 설치 단가 누락 반영
- 22) 목재동바리 과다수량 조정
 - 교량 종단에 따른 종곡선을 고려 경강단 산출 수량을 가로보 기준 산출
 - 1경간 목재동바리 평균 높이 0.672m로 산출하였으나, 경간 끝지점은 1.808m(제외500+240/1.068m) 균등한 비율이 아님
 - 예시) 당초) $(29 \times 0.672) = 19.488$
 조정) $[(14.5 \times (0.672/2))] + [(14.5 \times (0.672 + 1.068)/2)] = 17.487$

기타사항

- 사급자재 및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12,439천원(도금액 245,949천원, 관금액 866,490천원)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설치(철골조) : 1,317m²
 - LED조명 간판 설치 : 30개소
 - 주출입구 조형물 설치 : 1개소(14.4m × 8m)
 - 휴게쉼터 조성 : 1개소
 - 기존 아케이드 보수 : 1개소
- 사업기간 : 5개월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5,949	168,553	77,396	31.47%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제경비 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9%→9.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율]의 1.2배 계상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0.05%→0.07%
- 일반관리비 5%→6%
- 이윤 13%→15%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건축물 현장 정리 보통인부 0.15인→0.07인
 - 컨테이너 하우스(재료비+노무비+경비→경비)
 - 철근 운반비(재료비→경비)

- 주요 자재 단가 조정(조달청 가격 정보)
 - 컨테이너하우스 외 27종

○○ 시장 현대화 신축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7,442,702천원(도급액 3,717,212천원, 관급액 3,725,490천원)
- 사업내용
 - 연면적 : 9,581.11㎡(대지면적 25,061.8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부대공, 조경시설
- 사업기간 : 12개월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17,212	3,456,560	260,652	7.01%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산업안전관리비 산출 오류 조정
 - a값 (재+직노+도급자관급)×요일,
 - b값 (재+직노)×율×1.2 중 작은 값 적용
 - 공통 가설 공사 중 이동식화장실 내역 삭제
 - 환경보전비 내역에 포함

- 운반비 비목 조정(일위대가 운반비 품 전체 일괄 적용)
- 먹매김 품 조정(건축품셈 12-1)
 - 사무소→학교·공장(난이도 조정)
- 낙서방지페인트칠 조정(건축품셈 19-15)
 - 신너 0.0595L→0.05L
 - 퍼티 0.063KG→0.06KG
 - 연마지 0.525매→0.5매
- 무용제에폭시칠 조정(건축품셈 19-14)
 - 에폭시페인트 0.5337L→0.53L
 - 프라이머 0.1912L→0.19L
 - 시너 0.1258L→0.125L
- 콘크리트 연석(300*150) 조정
 - 쇠흠손 마감 품 삭제(건축품셈 16-1)
 - ※ 콘크리트면마무리 품과 중복
- 공종별 내역 조정(콘크리트 방수턱, 연석 등)
 - 관급자재 물량으로 조정(레미콘 일괄 수급)
- 트렌치 배수로(550*300) 조정
 - 스틸그레이팅(400*1000*50)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네오스톤블록포장(T=8cm) 조정
 - 소형고압블럭(아쿠아로드) 관급자재로 조정
 - 설치대가 토목품셈 12-3-3 보도용 블록 포장 소형고압블럭 적용
 - ※본 품은 준비, 모래부설 및 고르기, 기타 정리품 포함
 - wovon geotextile 자재 삭제
- PE이중벽관(φ150~φ450)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철근운반 비목 조정 : 노+재+경→경비처리
 - 건축물 현장 정리[보통인부 0.15인→0.07인(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

○○○ 연계도로 선형개량 공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88,000천원
(도급액 1,288,900천원, 관급액 527,900천원, 제잡비 48,200천원)
- 사업내용
 - 터널(L=690m) 전기공사 1식
 - 옥외전기설비 1식, CCTV 1식, 조명설비 1식, 배전반 1식 등
- 사업기간 : 12개월
- 발주유형 : 전기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88,000	1,053,500	234,500	18.21%

□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안전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2.15%+5148천원
→ ((재료비+직노)*2.15%+5148천원)*1.2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기계80%+인력20% → 기계90%+인력10%
 - 합판거푸집 4회 → 6회
 - 케이블(F-CV) 전기품셈 4-34적용
 - 접지용전선(F-GV) 전기품셈 3-38적용
 - 옥외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전선관 할증률 조정

마을명품 ○○○길 조성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00,000천원(도급액 508,500천원, 관급액 691,500천원)
- 사업내용
 - 토공 : 흙각기 2,129m³, 흙쌓기 3,248m³
 - 데크 : 데크로드(B=2.0m, L=137m), 조망대설치 1식
수변데크(B=2.0m, L=178m), 출렁다리((B=2.0m, L=50m)
 - 조경 : 산머루터널 100m, 생태연못설치 A=53m²
야생화군락지 1식
-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08,500	426,600	81,900	16.1%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순성토운반
 - 덤프운반시 적재함덮개설치및해체(t=0.5) 적용

- 잡철물제작설치 (철공 12.54인 적용)
 - 제작설치품을 철골공사의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품 적용
- 유로폼 단가 조정
 - 박리제 : 철재용(유성) 600원 적용
- 유리끼우기 품 조정
 - 유리공 0.47인 → 0.3인
- 산머루식재 일위대가 조정
 - 조경공 0.013인 → 0.005인
 - 보통인부 0.007인 → 0.004인
- 철골가공조립
 - 작업난이도 0.8적용
- 중기운반 및 가설공사 : 경비항목으로 처리
-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
 - 시멘트 외 26종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639,300천원(도급액 2,930,400천, 관급액 1,708,900천원)
- 사업내용
 - 중계펌프장 : Q=8,100m³/일
 - 이 송 관 로 : Ø400mm, L=3,985m
- 사업기간 : 20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30,400	2,656,500	273,900	9.34%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체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조립식 강관 동바리 수량 산출서 조정
 - 바닥 보이드 부분 물량 감
 - 내부수평비계 및 이동식강관말비계 중 현장여건 검토하여 삭제
 - 내·외벽체 모르타르 바름 횡수 조정(3회→2회)
 - 현장 시공 내역 반영(미장공, 보통인부 0.13인→0.08인)
 - 미장벽돌 단가 조정
 - 미장벽돌(점토, 토석, 190*90*57) 230원→225원

- 블록보강쌓기(사춤1종, 양면치장) 단가 조정
 - 보통인부 0.124인→0.024인
 - 조적공 0.2인 삭제, 콘크리트공 0.0243인 삭제
- 무기질탄성도막방수제 단가 조정
 - 아텍스 23,088원→19,764원(거래가격 p.479)
- 굴착(토사,L=20m) 단가 조정
 - 운반(덤프 15ton)단가 제외
 - 토목품셈 1-22 소운반 거리 L=20m 초과분에 대하여 계상
- 중계펌프장 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펌프카 타설
- 합판거푸집 1회 단가 조정
 - 합판(내수)12t*910*1820mm 7,740원→7,371원
 - 박리제 1,011원→828원
- 세라믹메탈방수방식 단가 조정(건축품셈 방수공사 준용)
 - 미장공 0.05인 삭제
 - 도장공 0.06인 삭제
 - 방수공 0.05+0.01+0.07=0.13인
 - 보통인부 0.1인→0.02+0.01+0.04인=0.07인
- 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수직면) 단가 조정
 - 방수공, 보통인부만 적용
 - 재료비,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방수층 보호재 깔기 30% 가산
근거가 없으므로 30% 제외 재산출
- 노출복합시트방수(바닥) 단가 조정
 - 건축품셈 13-6-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품 준용
 - 방수공 0.08인→0.06인
 - 보통인부 0.06인→0.03인
- 노출복합시트방수(벽체) 단가 조정
 - 건축품셈 13-6-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품 준용
 - 방수공 0.09인→0.08인
 - 보통인부 0.06인→0.04인

- 시공이음(지수판설치) 단가 조정
 - 지수판 PVC 200*5mm 2,600원→2,500원
- 맨홀뚜껑(실내형) 1100*1100 사급자재 단가 조정
 - 진천군 덕산면 대명그레이팅 견적단가 적용
- 난간 수평부, 경사부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잡철물 설치 조정
 - ※ 기성품인 STS 파이프 절단 용접설치하는 것으로 제작 품 제외
- U형측구 합판거푸집 3회→4회 조정
- U형측구 스틸그레이팅 500*100 사급자재→관급자재처리
 - 진천군 덕산면 대명그레이팅 견적단가 적용
- H-PILE 항타및 항발(H=10m,300×300)단가 조정
 - 토목품셈 10-35, 진동파일해머 선정에 따라 장비조합 변경
 - 진동파일해머 60kw→40kw
 - 크레인 40ton→34ton
 - 발전기 200kw→100kw
- H-PILE 항타및 항발(H=10m,300×300)단가 조정
 - 토목품셈 10-35, 진동파일해머 선정에 따라 장비조합 변경
 - 발전기 200kw→150kw
- H-형강 설치 및 철거(H=0-2m,H=300-500)단가 조정
 - 크레인 25ton→10ton으로 변경
 - ※ 현장 여건 및 자재 중량에 적합한 장비로 변경
- H-형강 설치 및 철거(H=6-8m,H=300-500)단가 조정
 - 크레인 25ton→10ton으로 변경
 - ※ 현장 여건 및 자재 중량에 적합한 장비로 변경
- 보결이 설치 및 해체 단가 조정
 - 발전기, 교류기 삭제 후 전력대가 반영
 - 용접공 0.046인→0.014인(기계품셈 3편 1-2-5품 준용,하향 6mm)
 - 특별인부 0.013인→0.004인

- 띠장연결(직선부) 단가 조정
 - 전기용접(FILLET,6mm 하향) 단가 조정(17번 참조)
 - 띠장연결 강관구멍뚫기 삭제
- 강재 사용료 단가 조정
 - 수량 산출서 작성 시 304.178ton은 할증 7%가 적용된 사항으로 할증량 공제하여 재산정
- PC강선 제작 및 삽입 단가 일괄 조정(L=14.5m,L=16.0m)
 - PC 강선 $\phi 12.7\text{mm}$ 4연선 1,500원→1,350원
 - 주입관 내역서 규격 강관($\phi 20\text{mm}$), 수량 산출서내 PE PIPE 상이
 - 강관 3,090원→흑관 1,664원 조정
 - PC 강선 제작 및 삽입에 따른 패커 내역단가 삭제
- 울타리(메쉬웬스)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 및 지역 건설활성화에 따른 도내 생산제품 우선 반영
- 조립식 간이 흙막이 단가 조정
 - 작업반장 1.5인→1.0인
 - ※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산정
- 기존관 보호공 단가 일괄 조정
 - 각재 와이어로프, 턴버클, 크립 꺾쇠 비계공 기준 손율 적용 : 3개월 6%
- 맨홀뚜껑 $\phi 648$ 사급자재→관급자재 조정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
- 조립식 가설 사무소 단가 일괄 조정
 - 와이어메쉬 4,323원→3,816원
 - 설치비 재료비의 5% 조정
 - 바닥콘크리트 두께 15cm→10cm 조정

○○○ 생태공원 조성 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52,946천원
(도급액 203,720천원, 관급액 244,465천원, 제잡비 4,761천원)
- 사업내용
 - 전력 간선 설비공사 : 전선관(154m) 및 터파기(35m³)
 - 외등 및 조경조명 설비공사 : 외등(19ea), 수목투사등(16ea)
 - 옥외방송설비공사 : PA용 스피커(19ea)
 - 옥외주차장 외등설치공사 : 외등(21ea)
 - 교통신호등설치공사 :보행신호등(4개소), 차량신호등(4개소)
 - 태양광발전설비공사 : 30Kw
- 사업기간 : 5개월
- 발주유형 : 전기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3,720	189,530	14,190	6.97%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기계80%+인력20% → 기계90%+인력10%

- 합판거푸집 4회 → 6회
- 주요자재 할증률 조정
 - 경질비닐전선관 10% → 5%
 -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접지용전선 10% → 5%
 -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5% → 3%
 -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10% → 5%
 - 폴리에틸렌 전선관 10% → 5%
 - 0.6/1kv 비닐절연난연비닐시스동차폐 제어케이블 5% → 3%
- 자재단가(조달청 자격정보)
 - 접지봉(14Φ*1000mm) 외 47종

○○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사업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388,000천원(도급액 43,595천원, 관급액 2,344,405천원)
- 사업내용
 - 생물반응조 상부덮개 설치
 - FRP COVER
 - 1계열 : W7.10m × L29.00m × 8개소
 - 2계열 : W6.85m × L29.00m × 8개소
 - 소화조 가스저장탱크 설치
 - 형 식 : 건식(Piston deck type)
 - 탱크용량 : 1,000m³ × 1식
- 사업기간 : 18개월
- 발주유형 : 건축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3,595	40,595	3,000	6.88%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무근콘트리트타설(펌프차)단가 조정
 - 콘크리트 펌프차 41m,80-95m³/hr→32m,80-95m³/hr
- 철근콘트리트타설(펌프차)단가 조정
 - 콘크리트 펌프차 41m,80-95m³/hr→32m,80-95m³/hr
- 철근가공조립 복잡→보통 조정
- 합판거푸집 1회 단가 조정
 - 보통인부(m² 당) 0.13인→0.12인(토목품셈 6-3-2)
 - 합판(내수)12t*1220*2440mm 10,929원→7,946원
 - 각재(외송) 455,090원→330,480원
 - 일반못 N75 1,120원→850원
 - 박리제 900원→828원
 - 합판거푸집 3회,4회,6회 단가 일괄 수정
- 원형거푸집 1회 단가 조정
 - 판재(외송) 598,802원→330,750원
 - 각재(외송) 455,090원→330,480원
 - 합판(내수)2.7t*1220*2440mm 3,079원→2,434원
 - 일반못 N50 1,120원→861원
 - 박리제 900원→828원
 - 원형거푸집 3회 단가 일괄 수정
- 컨테이너 하우스 단가 조정
 - 컨테이너(3m*12m*2.6m) 4,900,000원→3,6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00,000천원
(도급액 135,234천원, 관급액 161,628천원, 제잡비 3,138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 28대 설치
- 사업기간 : 2개월
- 발주유형 : 통신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5,234	126,516	8,718	6.45%

적용기준 및 법규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제경비 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11.5% → 9.5%
 - 산업안전보건비 (재료+직노+관급)*1.24%+1647천원
→ (재료+직노)*1.24%*1.2
 - 기타경비 5.8% → 5.6%
- 내역 및 일위대가 조정(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가격정보)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가격정보)
 - 각도기 50,000원 → 30,000원

- 제어함체 900,000원 → 800,000원
- 함체받침대 500,000원 → 200,000원
- 전원케이블(F-CV) 1,999원 → 1,570원
- 전선관(ELP) 430원 → 305.2원
- 접지동봉 3,300원 → 2,640원
- 전원케이블(F-CVV-SB) 3,531원 → 2,870원
- UTP케이블 1,150원 → 287원



2. 용역분야 심사사례



○○○ 하천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용역내용
 - 하천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 L=4.4km
 - 지반조사, 사전환경성검토 1식
- 용역기간 : 360일
- 발주유형 : 기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3,000	402,000	51,000	11.26%

적용기준 및 법규

-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주요 심사내용

1. 제경비, 기술료 산근 일위대가 조정
 - 측량비 보통인부 제경비, 기술료 적용 제외 (엔지니어만 적용)
 - 보링 기술료 제외
 - 품셈기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 포함
 - 실내시험, 석산재료원 직접경비성 항목으로 제경비, 기술료 제외
2. 사전환경성 검토 요율 조정
 - 사업개요, 대상지역 현황 제외(실시설계중복)
3.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조정
 - 순용역비(용역손해배상공제비,부가세 제외)×요율

4. 보링 토사, 자갈, 호박돌 코아바렐 : 더블→싱글
5. 자재 단가 조정
 - 싱글코어바렐 440,000원→80,000원
 - 메탈리밍셸 40,000원→35,000원
6. 토사 실내시험 단가 조정
 - 비중 51,123원→40,000원
 - 액성한계 83,853원→61,000원
 - 소성한계 64,015원→46,000원
 - #200체 통과량 시험 48,436원→38,000원
 - 입도시험 287,841원→189,000원(침강분석)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제반서류 수정후 시행
-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사업개요

○ 용역내용

- 중청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Q=40\text{m}^3/\text{일}$, $L=3.26\text{km}$
- 수안보 수회리하수관거정비 : $L=3.26\text{km}$
- 매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Q=30\text{m}^3/\text{일}$, $L=1.39\text{km}$

○ 용역기간 : 20개월

○ 발주유형 : 기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35,200	609,500	225,700	27.02%

적용기준 및 법규

○ 감리 대가의 기준

주요 심사내용

1. 공종별 난이도 조정

- 복잡공종 산출 방식→오수처리시설 복잡, 오수관거 단순 조정

2. 감리원 산출 방법 조정

- 각 공사별 산정 감리원과 공사비 합산 산정 감리원 평균값 적용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제반서류 수정후 시행
-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개요

- 용역내용 :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1식
 - 도로 확·포장공사 L= 3.0km
- 용역기간 : 60일
- 발주유형 : 기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5,240	115,566	149,674	56.43%

적용기준 및 법규

-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심사내용

- 노선측량 연장 산출 중복 조정 : 9km→3km
- 용역손해배상 공제료 부가가치세 반영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제반서류 수정후 시행
- 지방계약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의 집행

도로건설 문화재 발굴(시굴) 조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53,594천원
- 사업내용
 - 문화재 시굴조사 : 102,263m²
- 사업기간 : 12개월
- 발주유형 : 학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3,594	241,956	11,638	4.58%

적용기준 및 법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주요 심사내용

- 특수인부 → 작업반장
- 컨테이너, 전산장비 임차료, 기타 임차료, 통신 및 현장보안시설 운영비, 각종소모품비, 조사용품비, 사진재료비: 2개월 → 1개월
- 특수인부 및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삭제

○○음성 발굴조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50,0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재 시굴조사 : 1,860m²
- 사업기간 : 4개월
- 발주유형 : 학술용역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0,000	429,680	20,320	4.52%

적용기준 및 법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주요 심사내용

-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인부임 조정
 - 조사단장 7인 → 4인
 - 책임조사원 30인 → 29인
 - 조사원 64인 → 70인
 - 준조사원 64인 → 63인
 - 보조원 64인 → 56인
- 여비 중 식비 조정
- 보통인부 퇴직적립금 삭감
- 현장 인부임 중 작업반장 삭감
- “기타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비” 중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411,860천원
- 사업내용
 - 기본·실시설계,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열이용검토
 - ※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조경시설
- 사업기간 : 10개월
- 발주유형 : 기술용역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11,860	2,305,930	105,930	4.39%

□ 주요 심사내용

- 토질조사 및 시험 일위대가 조정
 - 기술료(시추조사) 삭제 : 건설품셈 기술료 포함
 - 기술료(기타 현장시험 등) 삭제
 - ※비(非) 엔지니어링 사업자(특별·보통인부 등)
- 자재 단가 조정(조달청 가격정보 반영)
 - 싱글 코어 바렐 90,000원→80,000원
 - 다이아몬드 비트 230,000원→200,000원
 - 더블 코어 바렐 480,000원→440,000원
 - 메탈 리밍셸 45,000원→40,000원
 - 코아 리프터 17,000원→14,000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위대가 조정
 - 사업개요, 대상지역 설정, 재해현황 조사 제외
 - ※다른 과업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재해 현황은 발주처 제공

- 손해배상보험료 적정 요율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요율 적용(실시설계)
 - 5억원이하 - 0.577%(기본), 0.092%(가산)
 - 5억원초과 10억이하 - 0.560%(기본), 0.089%(가산)
 - 10억원초과 20억이하 - 0.542%(기본), 0.086%(가산)
 - 20억원초과 30억이하 - 0.525%(기본), 0.084%(가산)



3. 물품분야 심사사례



○○○ 임대농업기계 구매

사업개요

- 구매내역
 - 퇴비살포기 : 2대
 - 농용굴삭기 : 3대
- 발주유형 : 물품구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5,940	106,664	9,276	8%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 농업기계 관련 가격정보지에 등록된 가격과 조사비교
- 거래실례가격 비교 검토 후 최저가격 적용

심사 착안사항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 여부 확인
- 물가정보지, 농업기계가격집, 거래실례가격 조사비교
- 공표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므로 가격 적용 주의

○○○ 도로관리 장비 구입

사업개요

- 구매내역
 - 모우터 그레이더 1세트(본체, 스캐리파이어 1식, 장삼날 100개)
- 발주유형 : 물품구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5,000	304,500	80,500	20.91%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 농업기계가격 정보지 등록된 가격 확인
- 취급업체 거래실례가격 비교 조사

심사 착안사항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 물가정보지 조사 확인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의료장비 구입

 사업개요

- 구매내역
 - 환자모니터장치 외 3종
- 발주유형 : 물품구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82,200	428,300	53,900	11.18%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과 거래실례가격을 재조사하여 조정 및 적용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착안사항

- 의료장비 전문업체 대상으로 거래실례가격 조사비교
- 각종 물가정보지 등 조사 확인

○○○ 색채선별기 구매

사업개요

- 구매내역
 - 색채선별기 구입 : 1대
- 발주유형 : 물품구매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20,000	285,000	35,000	10.9%

적용기준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 견적서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재조사 적용 및 조정
-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 여부 확인

착안사항

- 각종 물가정보지 조사 및 확인
- 견적서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확인

○○○ 직원업무수첩 제작

 사업개요

○ 구매내역

- 직원업무수첩 : 3,300부
- 10절(210mm × 290mm)

○ 발주유형 : 물품제작 및 구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400	23,958	2,442	9.25%

 적용기준 및 범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 과업내용에 따른 거래실례 가격 조사
- 일반관리비, 이윤 요율 적정 적용 여부 확인

 착안사항

- 매년 제작·구입하는 물품으로 전년도 계약심사 결과 확인
- 인쇄 관련 전문업체 대상으로 거래실례가격 조사비교

○○○ 포장기 구매

 사업개요 구매내역

- 포장기 : 1식

※ 벼, 보리, 옥수수 보급종 계량·포장용

 발주유형 : 물품구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000	35,000	3,000	7.89%

 적용기준 및 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주요 심사내용 심사요청 물품에 대하여 견적가격 재조사 적용·조정

- 계량포장기 : 38,000천원 → 35,000천원

 착안사항 취급업체 비교견적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조사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 물가정보지 조사 확인



4. 설계변경 심사사례



○○○○○ ○○○○ 복원사업 설계변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361,830천원(도급비 2,655,100천원, 관급자재 706,730천원)
- 사업내용 : 생태축터널 L=46m
 - 흙각기 1,130m³, 흙쌓기 27,725m³, 순성토 19,235m³
 - 프리캐스트 터널 L=46m
 - 아스콘 포장 1,664m², 교목류 식재 56주
 - 관목류 식재 4,330주, 초화류 34,720본
 -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65,585	195,958	69,600	26.21%

□ 주요 심사내용

1. 일위대가 조정

1) 순성토 운반 단가 조정 (운반거리 당초 L=15km, 변경L=8.2km)

- 당초 운반로 중 행촌교차 ~ 이화령 공사현장까지 5km는 계약단가 적용하며 토취장 변경에 따른 행촌교차로부터 토취장까지는 변경 당시 품셈기준으로 산정하여 협의 결정한 단가 적용
- 조정금액=(당초계약단가-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명칭	운반거리 변경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토 사	당초 계약단가 : ①(L=15km)	토취료, 깎기, 적재	976	330	341	1,647
		덤프운반(L=15km)	3,935	2,741	1,724	8,400
		소계	4,911	3,071	2,065	10,047
	당초 운반로중 축소부분 계약단가 (L=10km) : ②		2,814	1,960	1,233	6,007
	대체된 운반거리 (L=3.2km)변경당시 품셈기준 산정 낙착율 적용단가③		1,717	1,196	752	3,665
	조정금액 : ①-②+③		3,814	2,307	1,584	7,705

※ L=5km 구간내 운반속도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단가로 변경 불가

2) 암파쇄 방호시설 단가 조정

- H빔 운반거리 조정 : 현대제철 연기군 하치장부터 현장까지 L=90km
- H빔 천공 단가 조정(토목품셈 5-8 준용)
 - 보링공 0.43인→0.301인
 - 특별인부 0.43인→0.301인
 - 보통인부 0.86인→0.602인
 - 작업량 $0.301/2=0.1505$ 인, $1/0.1505=6.645$ m/일,
 $6.645/8=0.830$ m/hr 기계경비 단가 일괄 조정

3) 타일압착붙임 단가 조정

- 시멘트 kg당 4,400원은 40kg 기준 단가로 오류 적용
- 계약단가 3,390원적용 : 84.75원/kg

□ 기타사항

-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 등은 심사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집행

○○○○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변경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9,048,151천원(도급비 38,796,000천원, 관급자재 252,151천원)
- 사업내용 : 면적 A=1,389,202㎡
 - 토공 : 흙각기 3,543,531㎡, 흙쌓기 3,639,115㎡, 흙운반 3,543,531㎡
 - 배수공 : 우수관로(D250~D1200) 13,418m, 우수암거 1,848m
오,폐수관로(D150~D400) 7,218m, 저류지방류부 1식
 - 구조물공 : 보강토옹벽 491㎡, 상수도공 : 상수관로(D25~D400) 13,035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125,156㎡, 보도포장 47,207㎡, 장애인 및 자전거도로
포장 12,459㎡
 - 부대공 1식, 조경공 1식, 배수지 1식, 폐수연계처리 1식
- 사업기간 : 1,264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338,000	9,588,000	750,000	7.25%

□ 주요 심사내용

1. 원가계산 조정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1) 간접노무비 요율 조정 : 12.2%→9.3%
 -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괄 조정
 - 2) 기타경비 요율 조정 : 7.3%→7.0%
 -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괄 조정
-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율을 초과할 수 없음.

2. 일위대가 조정

- 1) 흙쌓기공 단가 조정 : 토지주택공사 적산기준
 - 불도저 표준운반거리는 20m로 하고, 운반토량의 30% 계상
- 2) 지구내 덩프운반 단가 조정
 - 지구내 덩프운반의 특성상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로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조정
- 3) 암유용운반 절취 단가 재검토 : 2번과 상동
- 4) 현장암 유용운반 단가 조정
 - 발파암소할 브레이카 작업능력 : $Q=9m^3/hr(30cm \text{ 미만})$ 조정
 - 생산품정리 및 상차 로더 규격 상이로 통일 적용
- 5) 저류지 방류부, 방류부 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단가 노무비 산출방식 보완
- 6) 우수BOX 흙막이공 가시설공-토류판 설치 및 철거
 - 판재: 사용횟수별 손율 적용 1회사용 50% 손율 적용-H-PILE 손율 3개월 통일
 - 판재가격 : 374,251원→267,000원
 - 형틀목공 0.082인→0.029인
 - 보통인부 0.154인→0.077인
 - 해체비 노무비의 80%적용, 재료비 및 경비 삭제
(공구손료 인건비3% 계상)
- 7) PE방호벽(대형)설치 및 해체(2회,6회) 단가 산식 적용 근거 보완
 - 재료비 손율 24%-12개월 적용 : 토목품셈 2-3-3준용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비 제외 대상)

8) PE방호벽 일위대가 조정(폐수연계처리시설)

- 손율 16%→12%(6개월) : 토목품셈 2-3-3준용, 공사기간6개월
- 설치노무비 재료비의 5% 계상
- 살수차 토목품셈 2-17품 준용

9) 디자인 난간 단가 비목 조정

- 잡철물제작 및 벤딩 가공비 경비성항목 처리

10) U형 소형고압블럭 해체 및 재설치 단가 조정

- 해체비 설치품(노무비)의 50%조정

□ 기타사항

- 도급공사비 기준 심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 등은 심사제외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집행



5. 시·군 주요 심사사례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전기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24,090천원
- 사업내용
 - 전기공사 1식
- 사업기간 : 270일
- 발주유형 : 전기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24,090	233,971	90,119	27.81%

 심사 착안 사항

- 2012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확인
- 내역서와 일위대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적정여부

 주요 심사내용

- 현장점검을 통한 시공방법 변경 : 수전 공급지점 변경
 - 당초 : 지중매설 92m
 - 변경 : 가공인입(전기공급지점 200m 한전부담)
 - ※ 사업비 절감액 : 35,656천원
- 관급자재 제품 변경 :
 - 효율과 기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변경
 - 수배전반, 냉난방기, 조명기구
 - ※ 사업비 절감액 : 54,472천원

○○○○○ 주변정비사업 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407,970천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822m(B=11.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87,600	837,000	250,600	23.04%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가격정보 등)
 - 가설사무실 베이스찬넬 등 13개 자재단가 조정
 - 유로폼 패널(600×1,200) 등 5개 자재단가 조정
 - 합판거푸집(1회~6회), 합판(내수 12t×1,220×2,440) 등 3개 자재단가 조정
 - 강관비계(Φ48.6*2.3) 등 4개 자재단가 조정
 - 아스팔트(RSC-3,4) 유제, 도로표지용페인트(상온형) 자재단가 조정
-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조정(건설표준품셈 등)
 - 직접노무비 총액 기준으로 현장사무소 규모 적용(직접노무비 9.30억→3.9억)
 - 성토고가 2m 이상인 구간이 50m 이상 이어지는 구간 동상방지층 삭제
(충청북도 도로설계기준, 국도설계실무요령)

기타사항

-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후 시행

○○ 구 매립장 우수침투 방지시설 설치 등 정비공사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467백만원
- 사업내용
 - 우수침투 방지시설 A=19,369m²
 - 벤토나이트, 차수막 설치 및 배수로정비
- 사업기간 : 6개월
- 발주유형 : 토목공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67,880	557,430	910,450	62%

주요 심사내용

- 산재보험료 요율변경 부분 적용 3.6% → 3.7%
- 휘발유, 경유 등 가격변동 자재의 가격 변동부분 적용
- 벤토나이트 부설품 변경(표준품셈 5-16 차수재공품의 인력품 적용)
- 수로간 규격 변경 500*320 → 500*500
- 벤토나이트 자재 실거래가격 적용 15,400원/m² → 9,000원/m²
- 순성토운반 덤프트럭 운반속도 변경 20km/hr → 30 km/hr
- 비닐깔기, 부직포깔기, 비닐철거품 조정
- 관종 및 일부 수량 조정

기타사항

- 당초 원제방의 사면부분 차수막 설치 재검토 요망
- 우기전 사업완료를 위한 사업발주전 토취장 선정 필요 등 공기관리

부 록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3.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4.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5.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7. 도내 공사용 자재생산업체 현황





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하반기 일부개정 예정〉

충청북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8-08-29 규칙 제 2614호
 (일부개정) 2009-07-10 규칙 제 2643호
 (일부개정) 2010-09-06 규칙 제 2681호
 (일부개정) 2010-12-31 규칙 제 269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9-30 규칙 제 2718호
 (일부개정) 2012-07-06 규칙 제 274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0. 12. 31>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지방공기업
 - 마.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바. 시·군(구청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신설 2009. 7. 10>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9. 7. 10, 2010. 9. 6, 2011. 9. 30, 2012. 7. 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시·군은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시·군은 2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삭제 <2012. 7. 6>
 5.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9. 6, 2012. 7. 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6, 2012. 7. 6>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7. 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0 규칙 제2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6 규칙 제2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30 규칙 제2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6 규칙 제2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3>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계약대상 업 체 (수의계약의 경우)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1,2,3항의 전산화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4>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원가계산서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일위대가표 포함) 1부. 3. 제조(수리)규격 및 시방서 1부. 4. 1,2,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5>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p>◦ 인쇄물내역</p>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p>◦ 첨부 서류</p>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2,3항의 전산화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서식6>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 주 소 :)
업 체	· 전화번호 :				
<p>◦ 기획편집내역</p> <p>1. 규 격 :</p> <p>2. 색 도 :</p> <p>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p> <p>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p>					
<p>◦ 첨부 서류</p> <p>1. 산출기초조사서 1부.</p> <p>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p> <p>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p> <p>4. 1,2,3항의 전산화일</p> <p>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별지 서식8>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도서 각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등] 2. 1항의 설계도서 전산화일(내역서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예정가격 작성 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제2장]
(2013.03.26)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금액에 48을 곱한 금액
 -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일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

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 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 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 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

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공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장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

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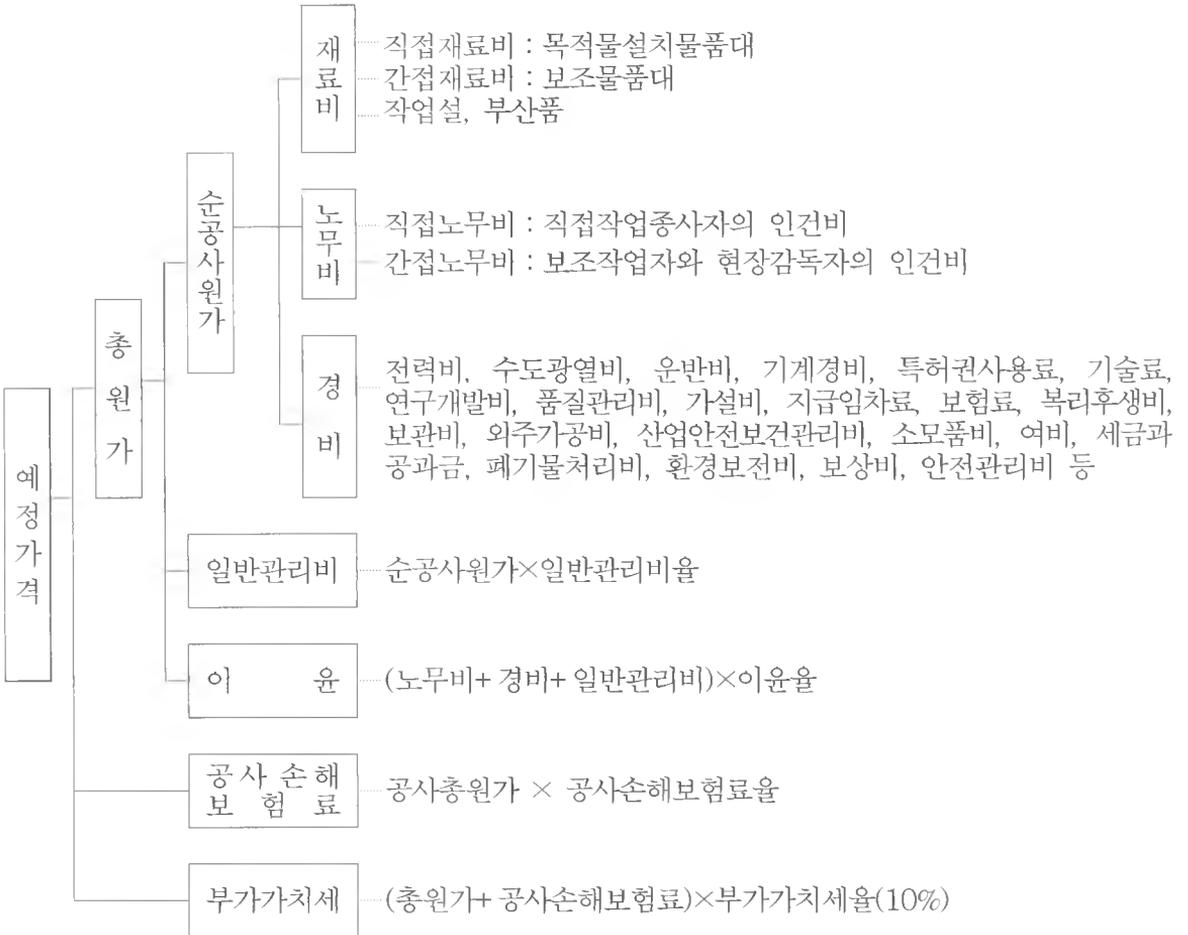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무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무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등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 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

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 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 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의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의외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

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

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

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정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계			

3. 분야별 원가산출 예시



1. 공사원가계산서

※ 제비율 적용기준

원가요소	원가비목	적용방법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적용기준
재료비	직접재료비		당해공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간접재료비		당해공사의 실체 형성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또는 부분품가치	
	부산물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작업실 등으로 매각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료비에서 차감할 금액	
노무비	직접노무비		현장 직접 작업자의 노임	
	간접노무비	(직노)×율	현장 관리, 감독, 보조자의 노임	
경비	산출경비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산재보험료	(노)×율		
	고용보험료	(노)×율		
	건강,연금보험료	(직노)×율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직노)×율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관급)×율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기타경비	(재+노)×율	<재료비+직노+산출경비>의 합계액	
	환경보전비	(재+직노+산출경비) ×율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순공사원가	(재+노+경)×율	위까지의 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노+경+일)×율	추정가격 기준		
이윤		추정가격 기준		
공사손해보험료				
총공사원가		위까지의 합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		

2. 학술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인건비	책임연구원	지위, 감독, 결론도출자(대학 부교수 수준)	-인원×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반영가능) -기준단가: 별첨참조	
	연구원	책임연구보조자(대학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조교 수준)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계			
경비	여비	국내외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유인물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 포함)	수량×단가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수량×단가	
	시약및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수량×단가	
	회의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경비 (수장 등)	인원×단가	
	임차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단가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강가상각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강가상각비		
	조사비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소계			
순원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용역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함

3. 청소 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재료비	각종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량×단가		
	소계				
노무비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 포함) ※ 생휴수당의 경우는 주40시간 적용대상업체는 지급 제외(무급휴가로 변경)	-기본급: 노무량×노임단가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단가표 준용)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60조, 70조 등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생휴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연400%이내) 퇴직총당금			
소계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3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75조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료 납부액	-직접계산 및 기준요율 적용 : 산출예시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채력단련비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부담금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교육비	직원 법정교육비			
감가상각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계					
순원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용역비					

※ 건축물 위생관리(청소)비 계산기준(한국위생관리협회) 선별적 준용

4.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련근거	
재료비	각종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수량×단가		
	소계				
노무비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총당금 포함)	-기본급: 노무량×노임단가 (한국위생관리협회 기준단가표 준용)	근로기준법 제53조, 56조, 60조, 70조 등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년, 월차수당			
		법정선입수당			
		기술, 위험수당			
	상여금(연400%이내)				
퇴직총당금					
소계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3조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75조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 시행령 12조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료 납부액		-직접계산 및 기준요율 적용 : 산출예시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통신비	교통비, 통신비		
		체력단련비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48조
장애인고용부담금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7조	
교육비	직원 법정교육비				
감가상각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계					
순 원 가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5%이내		
일반관리비합산원가					
이윤			10%이내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총 용 역 비					

※ 건축물 시설관리비 계산기준(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선별적 준용



4.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계약심사 관련 질의응답

1. 계약심사의 용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우려도 있는데 계약심사의 개념은?

- 계약심사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사업비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님

2.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 지침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침으로 심사대상 및 모든 심사절차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

- 계약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지침의 심사대상 기관 및 심사 내용, 심사대상 사업, 일상감사 관련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심사 절차 및 서식 등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가능하며 심사대상을 의무대상보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함.

3. 현행 일상감사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계약심사 업무는 심사의 내용이나 기준금액 측면에서 현행 일상감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중복되므로 계약심사 대상은 계약심사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로 갈음해야 할 것임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일상감사를 실시함)

4. 계약심사 부서에서 계약방법의 타당성 검토도 하는지?

- 계약심사 부서는 지방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등을 그 주요 업무로 하므로 계약방법의 타당성 검토는 자치단체의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일정금액이상 사업은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심의토록 하고 있음

5. 계약심사 부서에서 저가심사 후 낙찰자 결정까지 하는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시 계약심사 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저가심사 후 심사의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기능까지만 수행하고 낙찰자 결정은 해당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

6.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접수 당일 및 공휴일 그리고 보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하되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접수 당일은 산입,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해야 할 것임

7.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된 금액을 신규사업 발생시 사용 가능 여부?

-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에서 조정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13-4. 시설비의 낙찰차액 집행방법에 따라 당해사업 관련 설계변경 등에 대한 지출 외에 동일 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신규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8. 계약심사 과정에서 심사요청금액보다 증액 가능 여부?

- 계약심사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규정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부족하게 산정된 원가는 증액 가능함

9.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연의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4~5일 정도로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10.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 시급한 국가사업 등 계약심사 대상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제외함이 타당함

11. 계약심사시 적용하는 원가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에서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원가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함



5. 계약심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계약심사 관련 인터넷사이트 현황

구 분	사이트 주소	내 용
건설 계약 연구원	http://www.csr.co.kr/	기계경비 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기준 등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현황 파악
서울시 계약심사 동아리	http://cafe.daum.net/geyaksimsa	서울시 계약심사사례 각종원가 심사관련 자료
서울외국환증개(주)	http://www.smbs.biz/index.jsp	주요 통화기준을 확인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비용단가 확인
(사)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SW기업정보 및 통계서비스, SW노암단가, SW사업대가의 기준등 실무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http://www.keca.or.kr/	전기공사 관련자료 및 신기술자료, 전기-통신-신호 원가계산 자료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조경수목 가격 확인(조달청, 시중거래가격)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지반공학에 관한 자료 및 신기술 자료, 학술지 및 논문집 등
한국건설관리협회	http://www.gamri.or.kr/	감리노임 단가 등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공사 적산기준, 견적기준, 기술자재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실적공사비, 건설기술 관련 연구자료, 기술자료 등
조달청나라장터	http://www.g2b.go.kr	가격정보, 자재단가, 관련법령 확인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측량노임단가, 수치지도 관련자료 등
국토해양부	http://www.molit.go.kr	건설사업대가 기준,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 측량용역대가기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등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예정가격작성요령 등
환경부	http://www.me.go.kr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동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 - 31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4호(2012. 10. 4)는 이를 폐지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I.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 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I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23개 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훈령 제1498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2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분류 >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1. 가구	(4) 가구,문,씽크대,창	50	55
2. 금속	(19) 가드레일,가로등주,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쓰레기통,외벽패널,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공원 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과형관	41	59
3. 기계	(36) 공기살균기,공기조화기,냉각탑,냉동기,농업용관리기계,대형냉장고,모터펌프,무대장치,밸브,분사장비및약제,상업용오븐,소방기,소방용방제장치,송풍기,수분,승강기,약품투입기,여과기,열교환장치,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일체형청정장비,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주차장치,취사용기구,크레인,탈수및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팬코일유닛,펠릿연소기기,폐기물 소각로,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항온습기,혼합기및교반기	106	157
4. 목재, 종이	(4) 각재,방부목,판재,합성목재	7	8
5. 섬유	(1) 토목섬유	2	4
6. 인쇄, 광고물 등	(3) 광고판,실물모형,안내(표지)판	3	3
7. 전기	(21) 가로등기구,개폐기,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 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애자,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용연선,충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39	76
8. 전자·정보통신	(8) 구내방송장치,다중화장치,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13	20
9. 콘크리트, 레미콘 등	(16) 레미콘,맨홀박스,석재,세라믹기와,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근가,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19	35
10. 화학	(11) 강관,고무발포단열재,수량계보호통,전선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플라스틱자루,FRP제품및SMC포함,PVC관	28	41
10	123	308	458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구분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1	가구	가구	56121804	강연대	5612180401	강연대	32021, 32029, 32091, 32019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4411190701	게시판또는액세서리		
			56121009	경사진열람대	5612100901	경사진열람대		
			56121502	교실용걸상	5612150201	교실용걸상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56101520	로커	5610152003	군용사물함		
					5610152001	사물함		
			56101793	보조책상	5610179301	보조책상		
			56111902	산업용작업대	5611190201	산업용작업대		
			56101502	소파	5610150201	소파		
			56121505	수강용탁자	5612150501	수강용탁자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5612190301	수장고용수납장		
					5610154302	상		
			56101543	식탁	5610154301	식탁		
					5610153101	신발장		
			56122001	실험대	5612200101	실험대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5612200205	시약보관대	32029	교육및실험용과 학기기에한함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56122004	실험실용썬크대	5612200401	실험실용썬크대		
			56121099	이동식서가	5612109901	이동식서가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56112102	작업용의자	5611210201	작업용의자		
			56101516	장롱	5610151601	장롱		
			56121902	전시용진열대	5612190201	전시용진열대	32021, 32029, 32091, 32019	
			56101542	접이식의자	5610154201	접이식의자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찬장포함
			56101703	책상	5610170301	책상		
			56112108	책상용컴비의자	5611210801	책걸상		
			56101507	책장	5610150701	책장		
			56101592	청소도구함	5610159201	청소도구함		
			56101515	침대	5610151501	침대		
			56121002	카운터	5612100201	카운터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56101530	캐비닛	5610153001	캐비닛	16221	장식대, 장식품장 포함		
			56121508	컴퓨터책상	5612150801	컴퓨터책상				
			56101701	크레덴자	5610170103	문갑				
					5610170101	크레덴자				
			56101519	응접탁자	5610151901	응접탁자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5610170202	도면함				
					5610170201	파일링캐비닛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	5611160101	OA칸막이				
		56121506	학생용책상	5612150601	학생용책상					
		56101706	회의용탁자	5610170601	회의용탁자					
		문	30171504	목재문	3017150401	목재문				
			30179998	목재문틀	3017999801	목재문틀				
		싱크대	52151650	가정용싱크대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32021, 25994	가스대, 복합취사대에한함 싱크대벽장에 한함, 찻장포함		
			48102096	상업용싱크대	4810209601	상업용싱크대				
			52152204	가정용조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5	상업용조리대	4810209501	상업용조리대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	찬장	5610153801	찬장				
		창	30171696	목재창	3017169601	목재창	16221	창틀포함		
		2	금속	가드레일	30121793	가드레일	3012179301	가드레일	25112	금속제에한함
				가로등주	39112001	조명타워	3911200101	조명타워	25113	철재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25113	철재 및 스테인레스제에한함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25113	주물복합형가로등주에한함
							3911152602	스테인리스 가로등주	25113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24311, 24312, 25112,	주조제품에한함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25113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25113	
		금속울타리용철물	30152001	금속제울타리	3015200106	가설제울타리	25112, 25943		
					3015200105	금속제기타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21788	낙석방지책	3012178801	낙석방지책				
		난간	30121703	교량난간	3012170301	교량난간	25112		알루미늄제에한함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3116340301	돌망태	25943		
		방음판 및 방음벽	30121787	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3	가설방음판	25113		금속제에한함
					3012178702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보일러 및 구성품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4010209501	간접가열보일러	25121, 25130	발전용, 가정용 제외	
			40102002	수관보일러	4010200201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포함)			
			40102001	연관보일러	4010200101	연관보일러			
			40101834	연소기 또는 버너	4010183402	가스버너	29150		
					4010183403	가스오일겸용버너			
					4010183404	발전기용휘발유 버너			
					4010183401	오일버너			
			40102092	주철제보일러	4010209201	주철제보일러	25121, 25130		
		40102006	폐열보일러	4010200601	폐열보일러				
		스테인레스 물탱크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5122	PDF물탱크포함	
			24111897	온수탱크	2411189701	온수탱크			
		쓰레기통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4712170201	쓰레기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한함	
					4712170202	음식물쓰레기처리통	25112, 25113, 25932	일반철물에한함	
							22299	폴리에틸렌제품에한함	
		외벽패널	30151802	외벽패널	3015180209	금속재패널	25112		
		일반철물	30191896	텍플레이트	3019189601	텍플레이트	25112, 25113, 25932		
			30103201	스틸그레이팅	3010320101	스틸그레이팅			
		전광스코아판	49221501	스코어보드	4922150101	전광스코어보드	33309, 28423		
					4922150102	기타스코어보드			
		조립식구조물	30201705	이동식초소	3020170501	이동식초소	25112, 25113, 25119	금속제에한함	
			30222003	버스승강장	3022200301	버스승강장			
			30222064	자전거보관대	3022206401	자전거보관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30201796	조립식구조물	3020179601	조립식구조물(지붕구조물에 한함)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컨테이너하우스		
		주물제품	30121716	교량받침	3012171601	교량받침	24311, 24312	교좌장치, 단, 고무 또는 철판제품 제외 철개에 한함
			30121695	맨홀뚜껑	3012169501	맨홀뚜껑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69801	맨홀보조물		
			30121779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하수악취차단장치		
			31163299	압륜	3116329901	압륜		
		창	30171698	금속제창	3017169801	금속제창	25111	창틀포함, 알루미늄제에 한함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3011180101	용접철망	25943
		공원체육시설	56101605	옥외용벤치	5610160501	옥외용벤치	33302	산책로 및 임대주택포함
			49201612	운동시설물	4920161201	운동시설물(야외헬스기구에 한함)	33301	
			49241596	조경시설물	4924159601	조경시설물(옥외용벤치포함)	33302	
			49241597	조합놀이대	4924159701	조합놀이대		
			49241511	퍼걸러	4924151101	퍼걸러		
		케이블트레이	39131704	케이블트레이	39131704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	25113	
					3913170401	케이블트레이		
			39131705	케이블트레이퍼팅및액세서리	3913170502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3913170503	케이블트레이엘보					
		과형관	40142123	과형강관	4014212301	과형강관	24132, 25112	
3	기계	공기살균기	40161699	공기살균기	4016169901	공기살균기	29174	
		공기조화기	40101709	공기조화기	4010170901	공기조화기	29172	
			40101504	공조용댐퍼	4010150402	릴리프댐퍼		
					4010150401	환기댐퍼		
		40101902	제습기	4010190201	제습기			
		냉각탑	40101716	냉각탑	4010171601	냉각탑	29171	
		냉동기	40101712	스크루냉동기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29171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4010171001	왕복동식냉동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농업용 관리기계	21101904	사료배합기	2110190401	사료배합기	29210	농산물세척기에 한함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3	과일세정살균기		
					2318150602	자동야채세척기		
		대형냉장고	24131503	대형냉장고	2413150301	대형냉장고	29171	
		모터펌프 (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 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40151566	부스타펌프	4015156601	부스타펌프	29131	배수펌프장 및 하수 처리장용은 토출구경 1,200mm초과 제외
			40151570	사류펌프	4015157001	입축사류펌프		
					4015157002	횡축사류펌프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40151525	슬러지펌프	4015152501	슬러지펌프		
			40151547	심정용펌프	4015154701	심정용펌프		
			40151517	오수펌프	4015151701	오수펌프	29131	
			40151503	원심펌프	4015150301	다단벌류트펌프	29175	상수도용토출구경 500mm이상제외
					4015150302	단단벌류트펌프		
					4015150303	양흡입벌류트펌프		
					4015150305	자흡식펌프		
					4015150304	편흡입벌류트펌프		
			40151599	자동펌프	4015159901	자동펌프	29131	펌프모터일체형 펌프에한함
			40151553	전진공동펌프	4015155301	전진공동펌프		
		40151505	정량펌프	4015150501	정량펌프			
		40151546	축류펌프	4015154601	입축축류펌프	29131	배수펌프장 및 하수 처리장용은 토출구경 1,200mm초과 제외	
				4015154602	횡축축류펌프			
		무대장치	30221099	무대장치	3022109901	무대장치	29299	
		밸브	40141620	버터플라이밸브	4014162001	버터플라이밸브	29133	
			40141694	제수밸브	4014169401	제수밸브		
			40141688	체크밸브	4014168801	체크밸브		
			40141615	플랜밸브	4014161501	플랜밸브		
		분사장비 및 약제	46191603	소방호스또는노 즐	4619160301	소방호스용노즐	29194	
					4619160302	소화용호스		
		상업용 오븐	48101517	상업용오븐	4810151701	상업용오븐	28511	
소방기	46191601	소화용기구	4619160102	소화전	29133			
			4619160101	수동식소화기				
			4619160107	에어졸식소화용구	29194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4619160111	자동식소화기		
					4619160103	캐비닛형소화기		
					4619160106	포소화약제		
					4619160105	하론소화설비		
					4619160109	CO2소화설비		
					4619160115	HCFC소화설비		
		소방용방재장치	46182504	화재수신기	4618250401	화재수신기	26410, 28901	중계기포함
		송풍기	40101504	공조용덤편	4010150402	릴리프덤편	29173	
			23990599	소음기	2399059901	환기덤편		
			40101601	송풍기	4010160101	송풍기		
		수문	24101676	가동보	2410167601	가동보	25111	고무가동보제외
			40141784	수문	4014178401	수문문비	25111	수문 1면당면적 20㎡ 초과제외
					4014178402	수문문틀		
					4014178403	수문밸브		
			24101685	수문권양기	2410168501	수문권양기	29210	
		승강기	24101682	덱웨이터	2410168201	덱웨이터	29162, 29163	속도분속 105M이하
			24101601	엘리베이터	2410160101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96	휠체어리프트	2410169601	휠체어리프트		
		약품 투입기	47109960	약품투입기	4710996001	약품투입기	29175	오존발생장치 제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4710150501	염소투입기		
					4710150503	이산화염소발생기		
					4710150502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여과기	40161505	공기여과기 (에어필터)	4016150501	공기여과기 (에어필터)	29174	
			40161508	백필터	4016150801	백필터	29174	
			40161503	집진기	4016150305	관성력집진장치	29174	
					4016150302	세정집진장치		
					4016150303	원심력집진장치		
					4016150301	전기집진장치		
					4016150306	제진장치		
			4016150304	중력집진장치				
		열교환장치	40101802	열교환장치	4010180201	열교환기	29176	
		음식물쓰레기처리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	2318199801	음식물쓰레기처리	29299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응집기	47109992	응집기	4710999201	응집기	29175	
		일체형청정장비 (크린룸)	30201704	청정실	3020170401	청정실	29172	
		자외선살균기	47101517	자외선살균기	4710151701	자외선살균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재활용품자동선별기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2410229801	재활용품압축기	29299	
		주차장치	24101687	자동주차장치	2410168701	자동차주차장치	29162, 29169	
			24101689	주차관제장치	2410168905	주차경보등	29163, 28903	
					2410168910	주차관제주변기기		
					2410168902	주차권발행기		
					2410168908	주차권판독기		
					2410168906	주차안내판		
					2410168907	주차요금계산기		
					2410168901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4	차량감지기		
			2410168903	차량인식기				
		2410168909	차량차단기					
		30221002	주차구조물	3022100201	주차구조물	29162, 29169, 42139		
		취사용기구(가정용 제외)	48102097	배식대	4810209701	배식대	28511	
					4810209702	식판배분대		
			48101809	상업용곰솔 또는국솔	4810180901	국솔		
			48101511	상업용그리들	4810151101	부침기		
			48101521	상업용레인지	4810152101	상업용가스레인지		
					4810152102	중화식레인지		
			48101530	상업용밥솥	4810153004	가스밥솥		
					4810153001	증기밥솥		
					4810153002	취반기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61501	상업용식기세척기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4810189601	상업용주방후드		
			23181506	세척장치	2318150601	세미기		
			52152202	식기건조대	5215220201	식기건조대		
		48101710	음수대	4810171001	음수기			
				4810171002	음수대			
		48101894	음식쓰레기	4810189401	음식쓰레기처리대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처리대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4810181801	주방기구소독기			식기건조기포함
		크레인	24101501	카트	2410150101	카트		29169	
			24101654	갠트리크레인	2410165401	갠트리크레인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24101602	호이스트	2410160201	전동식와이어로프 호이스트			
		2410160202			전동식체인 호이스트				
		탈수 및 배수장치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4710152507	디스크형농축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4710152503	디칸터형원심 탈수기			
					4710152501	벨트프레스탈수기			
					4710152502	스크루프레스형 탈수기			
					4710152504	원심농축기			
					4710152506	중력식벨트농축기			
					4710152508	진공탈수기			
		4710152505	필터프레스탈수기						
		탈취기	40161605	탈취기	4016160501	탈취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통상 여과기	47109970	상향류식여과장 치	4710997001	상향류식여과장치		29175	
			47109972	섬유여과기	4710997201	섬유여과기			
			40161502	워터필터	4016150201	워터필터			
		팬코일 유닛	40101708	팬코일유닛	4010170801	팬코일유닛		29172	
		펠릿 연소기기	40102098	나무보일러	4010209801	나무펠릿보일러		29150, 25121, 25130	
		폐기물 소각로 (70ton/ 일이하)	47101529	소각로	4710152901	소각로		29150	가스냉각장치 및 유해가스저감장치 포함
			40101850	화장로	4010185001	화장로			
		하수처리 장치 및 구성품	47109995	거품제거기	4710999501	거품제거기		29175, 29163	
			47109976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601	경사판침강장치			
			47109979	드럼스크린	4710997901	드럼스크린			
			47109991	디스크스크린	4710999101	디스크스크린			
			40161607	배연탈황기	4016160701	배연탈황기			
			24101712	벨트컨베이어	2410171201	벨트컨베이어			
			47101542	부상분리장치	4710154201	부상분리장치			

구분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47101513	산소발생기	4710151301	산소발생기					
			47109997	수중포기	4710999701	수중포기					
			47109998	스킴제거기	4710999801	스킴제거기					
			24101730	스크루컨베이어	2410173001	스크루컨베이어					
			47101536	슬러지수집기	4710153601	슬러지수집기					
			24101714	에어컨베이어	2410171401	에어컨베이어					
			47109965	여과사인양기	4710996501	침사인양기					
			47109990	염소가스중화 장치	4710999001	염소가스중화장치					
			47109964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4710996401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47101522	용수처리장치	4710152201	일체형폐수 처리장치					
			40161701	원심분리기	4016170101	원심분리기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2410174601	이동식컨베이어					
			47109980	제진기	4710998001	제진기					
			24101722	체인컨베이어	2410172201	체인컨베이어					
			47109987	평면스크린	4710998701	평면스크린					
			47109978	협잡물처리	4710997801	협잡물처리					
			47109989	호퍼	4710998901	호퍼					
			47101501	활성탄장비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향온 향습기	40101715	향온향습기		4010171501	향온향습기	29172	
				혼합기 및 교반기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4710151201	교반기	29175	수처리용에한함
4710151202	혼합기										
4	목재 종이	각재	30103622	각재	3010362201	각재	16101	목재에한함			
			30121898	수목보호용 지시대	3012189801	수목보호용지시대					
		방부목	11122006	방부목(防腐木)	1112200601	방부목	16103				
		판재	30161702	목재마루재	3016170202	목블록	3016170201	플로어링보드	16101, 16102		
					30103605	목재판재				3010360501	목재판재
			30161901	루버(벽판재)	3016190101	루버(벽판재)			목재에한함		
		합성목재	30103699	합성목재	3010369901	합성목재	16212				
5	섬유	토목섬유	30121786	차수매트	3012178601	차수매트	13992, 13994				
			30121702	토목섬유	3012170204	복합포	13992, 13994				
					3012170201	직포매트	13999, 13225, 13229,	P.P섬유 직포매트 (PET 제품포함)에 한함. 단, 복합매트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13219	제외		
					3012170202	토목용부직포	13992, 13994			
6	인쇄, 광고물 등	광고판	55121904	광고판	5512190401	간판	33910			
		실물 모형	60109899	실물모형	6010989901	실물모형	33934	전시용영상, 특수효과장치 및 과학전시물 포함		
		안내(표지)판	55121718	안내판(철도안내 표지판 포함)	5512171801	안내판(철도안내 표지판 포함)	33910	옥내·외안내(표지)판에 한함		
							18111			
7	전기	가로등기구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3911160801	보안등기구	28422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9101617	고압나트륨등	3910161701	고압나트륨램프	28410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160301	가로등기구	28422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3911160304	LED터널용 등기구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28113		컨버터포함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3911180104	무전극램프용 안정기				
			39101614	메탈할라이드등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28410			
			39111697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28422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39101699	LED램프	3910169901	LED램프	28410			
			개폐기	39121105	개폐장치	3912110503	부하개폐기		28121	25.8KVA이하 가 공용 가스절연부하 개폐기에 한함
			경관조명 기구	39111606	수중조명	3911160602	수중조명등		28422, 28423, 28429	
3911160601	LED수중조명등									
39111605	경관조명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3911160501		LED경관조명 기구						
39111611	투광조명	3911161101		투광등기구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3911161103	탐조등							
계장 (계측) 제어장치	39121189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28122	통합감시 제어설비 포함. 일차리능력으로 하계수는 10만톤, 상				

구분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 분류 번호	특이사항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수는 30만톤이하의 수처리설비에 한함	
		교통 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등	4616150401	교통신호등	28903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46161572	신호등주 및 액세서리	4616157201	신호등주	25113		
		도로 표지병	46161585	도로표지병	4616158501	도로표지병	25999, 22299		
		도로 표지판	55121710	교통표지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25995		
					5512171002	도로표지			
					55121712	방향표지판		5512171201	방향표지판
		무정전 전원장치 (UPS)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28119	생산용량500KVA 이하에 한함	
		발전기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28111	2,000KW초과 및 해상용 제외, 방음형포함	
		배전반	39121103	배전반	3912110301	폐쇄형배전반	28122	중앙감시반,154KV ,345KV용보호배 전반포함	
					3912110303	배전함			
			39121101	분전반	3912110101	분전반			
					3912110102	분전함			
					3912110103	주택용분전반			
		39121104	전동기 제어반	3912110401	전동기 제어반				
		변압기	39121001	배전용변압기	3912100102	건식변압기	281 12	아몰퍼스변압기 포함	
					3912100101	몰드변압기(3,000 KVA이하에 한함)			
					3912100104	유입변압기			
					3912100105	주상변압기			
					3912100106	철도용단권변압기			
					39121002	전력변압기			3912100201
			39121030	지상변압기	3912103001	부하개폐형지상 변압기			25.8KV-Y이하에 한함
					3912103002	일반지상변압기			
		비닐 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 및 피복선	2612152404	300/500V 기기 배 선용단심비닐절연 전선	28302		
					2612152412	옥외용비닐절연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전선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	4111250401	수도미터	27214	
		애자	39122182	애자	3912218206	인류애자	23213, 28902	내오손 결합애자 포함, 36,000Lbs 이하현수
	3912218201				지지애자			
	3912218204				포스트애자			
	3912218205				핀애자			
	3912218203				현수애자			
		유량계	41112501	유량계	4111250101	유량계	27214	유량계관련 계측기기 포함
		자동점멸기	39121107	조명 제어장치	3912110701	가로등자동점멸기	28122	LED가로등자동 점멸기포함
					3912110702	조명용 제어장치		
		자동제어반	39121106	전력감시또는 제어장치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28122	정전류조정기, 최대 수요 전력 제어기, 모니터장치, 집중 표시제어장치, 전력 보호감시장치에 한함
					3912110604	모니터장치		
					3912110605	전력보호감시장치		
					3912110602	정전류조정기		
					3912110606	집중표시제어장치		
					3912110603	최대수요 전력 제어기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裸線)	2612152204	전기용경동연선	28302	
					2612152202	전기용연동연선		
		충전장치	26111704	충전장치	2611170401	산업용충전장치	28119	송변전용, 통신용에 한함
		프로세스 제어반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4111249801	프로세스제어반	27215, 27216	상하수측정용 계측기포함
		실내조명기구(LED용 기구 포함)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3911151501	다운라이트	28422, 28423, 28429,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3	형광램프용안정기		28113
			39111501	형광등기구	3911150105	공조등	28422, 28423, 28429	
					3911150103	매달림형형광등기구		
					3911150101	매입형형광등기구		
					3911150104	벽부형형광등기구		
				3911150102	천장직부형형광등기구			
		39112102	LED실내조명등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28422,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8	전자·정보통신	구내방송장치	45111705	구내방송장치	4511170501	구내방송장치	28423, 28429		
		다중화장치	43221810	광다중화장치	4322181001	광다중화장치	26521, 26529, 26421	26410	
			43222695	다중통신장비	4322269501	다중통신장비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4322282201	시분할다중화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	열차행선안내장치	2525032501	열차행선안내장치	31202, 28423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43221521	원격접속장치	4322152101	원격접속장치	27211, 27215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전광판	55121903	전광판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28423		
					5512190302	기상전광판			
					5512190301	안내전광판			
		전화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43222696	동보장치	4322269601	동보장치	2641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4322150101	자동안내장치			
			43222818	배선반	4322281801	구내단자함			
					4322281802	국선단자함			
					4322281803	본배선반			
					4322281804	중간배선반			
		4322281805	통합배선반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출입통제시스템	26329, 26410, 28901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46171610	보안용카메라	4617161001	영상감시장치	26421, 26429		
4617161002	CCTV카메라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4616151601	차량번호판독기		불법주차 및 보안용에 한함			
9	콘크리트, 레미콘 등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3011150501	레미콘	23322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음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	3012169901	콘크리트맨홀블록	23326	유리섬유복합판 맨홀제의	
					3012169902	플라스틱계맨홀	22299, 22211	PE맨홀에 한함	
		석재	30131503	석재블록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23911, 23919		
			30131702	석재타일및판석	3013170201	자연석판석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11111698	조경석	1111169801	조경석			
			11111604	화강암	1111160401	화강석			
		세라믹기와	30151590	세라믹기와		3015159001	그올림한식기와	23231	
						3015159003	오지기와		
						3015159002	유약기와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	23991		
		점토벽돌	30131602	세라믹벽돌		3013160202	미장벽돌	23231	
						3013160201	점토바닥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23326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30131598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3013159801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30109904	순환골재	3010990401	순환골재	38230	제품제조용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생산한 순환골재는 제외	
		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	콘크리트관		4014210903	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	23326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제외
						40142109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4014210902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	철근콘크리트근가	3011180401	철근콘크리트근가	23325, 23326		
		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	배수로		4014178201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23326	
						4014178202	철근콘크리트플룸관		
						401417820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콘크리트벽돌	30131603	콘크리트벽돌	3013160301	콘크리트벽돌	23325		
		콘크리트블록	30131502	콘크리트블록		30131502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23325, 23326	
3013150206	소파블록								
3013150204	속빈콘크리트블록								
3013150209	콘크리트경계블록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콘크리트 파일	30102802	콘크리트파일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23326	PHC파일에 한함		
					3010280201	콘크리트파일				
		타일	30131704	세라믹타일 및 판석	3013170403	그립타일	23232			
					3013170401	도기질타일				
					3013170405	모자이크타일				
					3013170408	부조타일				
					3013170402	자기질타일				
		10	화학	강관	40142189	피복강관	4014218902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24191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 강관 제외
					40142384	피복강관이음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고무발포 단열재	40101872	고무발포단열재	4010187201	고무발포단열재	22199	
				수량계 보호통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38302, 22222, 22299	
전선관	39131706			전선관	3913170605	경질비닐전선관	22211			
					3913170610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페인트	31211518			방청페인트	3121151801	방청페인트	20421			
	31211501			에나멜페인트	3121150101	에나멜페인트				
	31211599			특수페인트	3121159901	특수페인트				
	31211803			페인트용희석제 및세척제	3121180301	시너				
폴리에틸렌(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2211, 22299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393			폴리에틸렌제관이음	4014239303	가스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폴리에틸	24112404	상자	2411240402	운반상자	22299					

구분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산업분류번호	특이사항
		제품명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렌제품	40141789	폴리에틸렌물받이	2411240403	플라스틱상자		
					4014178902	철강보강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1	폴리에틸렌제물받이		
			24112702	플라스틱펠릿	2411270201	플라스틱펠릿		
		폴리에틸렌필름	30151899	방수시트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	22212, 22231	
			47121701	쓰레기봉투	4712170101	쓰레기봉투		
			13111201	폴리에틸렌필름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플라스틱자루	24111503	플라스틱포대	2411150303	폴리에틸렌포대	22212, 22231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13225, 22231	
		FRP제품 및 SMC 포함	24111810	물탱크	2411181001	물탱크	22222, 22223, 22229	
			24111805	약품탱크	2411180501	약품탱크		
			47101535	오수처리장비	4710153501	오수처리장비		
			30231602	이동식화장실	3023160201	FRP이동식화장실		
			47101531	정화조	4710153101	정화조		
			30171588	합성수지제문	3017158801	합성수지제문		
			30179997	합성수지제문틀	3017999701	합성수지제문틀		
			30171695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합성수지제창		
		PVC관(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22211	주철제 제외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396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7. 도내 공사용자재 생산업체 현황



도내 공사용자재 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 외)					
일홍제재소	김혜경	충주시 상당구 대성로 64 (서운동)	각재, 판재	253-6001	
세화조경	우봉운	충주시 소태면 덕은로 794	각재, 원주목	851-8918	
엄정제재소	김장훈	충주시 엄정면 동막강현길 361-10	각재	852-2381	
우성목재	우원종	충주시 대소원면 쇠실로 966	각재, 판재	851-3683	
(주)티엔우드	최현동	충주시 소가주 2길33	원목마루, 판재	011-246-0876	
영창목재	이유순	제천시 단양로 3015(대량동)	각재, 판재	647-2280	
충주청원산림조합 청원지소	최낙선	청원군 낭성면 단재로 1700	각재, 판재, 톱밥, 수피	297-4236	
한도고건축(주)	박혜수	청원군 문이면 미천고은로 291-20 외 6	각재, 판재, 피목, 톱밥, 파렛트	296-9700	
(주)오창목재	홍동표	청원군 오창읍 화북로 423-14	각재, 판재	217-2051	
신우제재소	이종근	청원군 북이면 대울내추길 195-26 외 2개 주소	각재, 판재	214-4947	
림가	임규일	청원군 옥산면 성재사정로 196-46 외 4개 주소	각재, 판재	010-5573-5430	
동원목재	송영돈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912	각재, 판재	214-6077	
신성목재	신성문	청원군 남이면 척산4길 11-137	각재, 판재	010-5454-7984	
상원제재소	류정희	청원군 가덕면 단재로 1616-3 외 2개 주소	각재, 판재	283-3356	
신원갤러리	김계현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155-15	목재문	042-863-0801	
대훈테크	전춘길	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1310-26	목재문 문틀		
유림목재(주)	변종운	청원군 가덕면 금거1길 64-22	목재창호문틀, 목문갈판	298-6521	
강남제재소	김기태	청원군 강내면 저산태성로 22	각재, 판재	232-7477	
현대포장(주)	오덕균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197	각재, 판재, 조장용판지상자	214-1110	
유림목재(주)	변종운	청원군 가덕면 금거1길 18	목재창호문틀, 목문갈판	298-6521	
강남제재소	김기태	청원군 강내면 저산태성로 22	각재, 판재	232-7477	
현대포장(주)	오덕균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197	각재, 판재, 조장용판지상자	214-1110	
유림목재(주)	변종운	청원군 가덕면 금거1길 18	목재창호문틀, 목문갈판	298-652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세솔	이순희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35	목재문, 목재문틀, 목재가구	232-5508	
관기제재소	구필서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14	각재, 판재	543-3366	
성원제재소	안경구	보은읍 남부로 4305-1	합판, 각재	544-4989	
동아목재소	김준호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283	각재 및 판재	274-8899	
윤희산업	황윤희	옥천군 동이면 세산2길122	각목, 판재	305-7650	
황간제재소	이경배	영동군 황간면 신촌2길 7-20	각재, 판재	742-4202	
(주)중부	김경환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240	각재	5331336	
신동원목재	송영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100-5번지 외 4	각재, 판재	53233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주)대오	박영식	충주시금가면충원대로1397	PE이중벽관, 하수관	032-563-1881	
(주)중원 GLB	이호성	충주시용탄농공1길6	pe필름코팅	844-1100	
(주)태광뉴텍	신진문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산225-5	pe필름	853-7461	
국도화학산업	김영국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158	FRP정화조, 오수합병정화조	011-338-1560	
영진화학(주)	이성배	충주시노은면점터길17	PE전선관	843-2200	
(주)태광엠텍	이강희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292	PE, PP점착필름등	857-0227	
근영실업(주)	김정현	제천시 내토로73길48(교암동)	FRP그레이팅	645-0362	
(주)경우크린텍	권영국	제천시 강저로2길50(강제동)	FRP합병정화조	648-1701	
(주)태전	황태운	청원군 가덕면 금겨내암로 125	PE, PVC제품	298-2090	
(주)삼일기연	권용균	청원군 가덕면 금겨1길 64-34 외 1개 주소	TUBE, 적층관, PE이중벽관	298-0096	
(주)씨앤케이	권용균	청원군 가덕면 금겨1길 64-34 외 1개 주소	PE적층관, 이중벽관, 프라스틱관	298-009	
삼화산업	서승권	청원군 북이면 대올리 3 09-1번지 외 1개 주소	PE필름		
자연화학	백현철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68-35	폴리에틸렌필름, 플라스틱포대	234-5683	
대우패키지(주) 청원공장	이동준	청원군 가덕면 금겨내암로 308	PE, PET용기	298-7685	
(주)신양화학	이우석	청원군 강내면 공현연꽃3길 33 외 1개 주소	pe용기	232-1862	
새한프라텍(주)	박상운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851-11 외 2개 주소	PE, PET용기	217-4051	
저성수지	김만숙	청원군 가덕면 청용3길 89	PE, PP	297-5652	
이노화학(주)	박상신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168-5	PVC배관, 동관배관, 입상관고정틀	269-106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남신테크	김승한	청원군 현도면 우록길 15-34 외 3개 주소	정화조, 정화조여과제	360-2995	
대영산업	김영수	청원군 북이면 장재금대로 438	PE정화조	213-9484	
세은피엔피(주)	양홍선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68	가스관 및 PE관	544-8171	
(주)덕일산업	민병덕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리로 497	PE, PP필름봉투	732-5307	
(주)아이엘테크	이관기	옥천읍 서대구일로 204-8	복합가로등주	400-4483	
(주)자강	민남규	옥천군 동이면 동이농공길 73-3	PE필름	731-0071	
청수환경(주)	임명숙	옥천군 이월면 이월농공로 50	FRP 오수처리시설	731-6163	
한국석유공업(주)	강철구	옥천읍 옥천농공길 100-2	방수시트, 열수축관	733-9300	
(주)서진라이트	이희자	진천군 이월면 마산길 35	FRP채광판, FRP일반성형제품	532-9747	
(주)서진라이트	이희자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12 외 1	F,R,P 채광판, F,R,P 일반성형제품	532-9747	
(주)한빛	이종운	진천군 이월면 송두4길 56-42	정화조, 물탱크, 조립식구조물, 조경시설물	533-1036	
유진산업	허경숙	진천군 이월면 미잡리 239-1번지 외 1	공업용, 농업용비닐, PP마대	017-415-3711	
태광에스엠씨(주)	손지훈	진천군 이월면 송두4길 56-55	FRP정화조, 부속품	533-1542	
(주)삼성기전	양석원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08	폴리에틸렌이중벽구조 하수도관	011-809-3113	
(주)한성이엔텍 진천지점	민병관	진천군 덕산면 인산3길 93	FRP 오수정화조	233-2166	
대경산업	정강채	진천군 이월면 송두4길 56-69	PE정화조		
대윌텍	전제용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290	FRP오수처리시설	537-7325	
서진산업	이천근	진천군 초평면 상통길 31-1 외 1	P,E필름	235-2551	
유일화학	한은희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326	하이덴비닐, pe비닐	017-288-6261	
증경산업(주)	안병우	진천군 진천읍 상산2길 128-13	FRP오수처리시설	532-9033	
창원화성(주)	김경우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8-16 외 3	폴리에틸렌 필름	536-2222	
콘프라테크(주)	박경숙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외 2	쓰레기봉투(비닐)	010-8609-0561	
콘프라테크(주)	박경숙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9	쓰레기봉투		
태성환경(주)	이강경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290	정화조	537-0075	
한영케미칼	한중수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9 외 2	쓰레기봉투(비닐)	533-6287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TK환경개발	최연준	진천군 이월면 마산길 101 외 4	정화조	5361183	
(주)서원양행	이종원, 이 광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692-72	PE PIPE류, DRIP TAPE류	833-9009	
(주)인성산업	장현숙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사담1길 67-20	PVC관, 이동식화장실 제조	011-9840-0082	
대영산업	김영주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방축골길 76	PP, PE평판시트	836-4028	
동방산업	김대중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883번지	PE배수로, PE빗물받이	010-9444-8988	
(주)금평산업	김민규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238 외 5개 주소	Pe Pipe류, Golden drip류		
(주)대진	장명환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 739-12	PE전선관, 합성수지박스, 연결부품	881-9141	
(주)새시대	박남석	음성군 삼성면 대정길 67	FRP탱크, FRP보트	010-3927-2581	
(주)신홍	신종화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300번지 외 3 필지	PE필름	878-8465	
(주)에코인조목재	조현택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700번길 88	PE 인조목재	882-0052	
(주)유원산업	진상욱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214번길 60-14 외 2개	P·P 포대	010-4011-2282	
(주)제론텍	박화준	음성군 대소면 대물로 75-47	폴리에스터필름	883-4501	
(주)중앙플랜트	고중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866	FRP	883-8140	
구영산업	김영택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1135번길 16	PP포대	878-1144	
뉴월드인텍(주)	김도중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266 외 1개 주소	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화장실	877-6446	
대도물산(주)	이근희	음성군 생극면 능안로 182 외 2개 주소	호환용블럭, pe법면블럭	877-6981	
대일산업(주)	이홍렬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4-1번지	F,R,P정화조 및 물탱크	882-7761	
신흥기업	신종화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300 번지	PE필름	878-8465	
씨카코리아(주)	강길석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64번길 70	복합방수시트, 합성고분자계방수시트	883-1223	
엔비산업(주)	이은권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631번길 18-11 외 1개	PVC 이음관, PVC 부속품	882-8450	
중원산업	이중섭	음성군금왕읍 초금로 499	PE지중전선관	882-8460	
태광마대	이정태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 27	P,P포대	882-5561	
승일산업(주)	심용보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29-13	이동화장실	423-1908	
비금속 광물제품					
(주)거화이에스알	진용을	충주시 산척면 세고개안길 50	투수형점토, 하천블록	856-7455	
(주)대홍레미콘	김광현	충주시 가금면 창동길 67	레미콘	855-660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에이치비티	김경환	충주시 산단6로 36	모르타르, 콘크리트혼화제	857-9801	
(주)충주레미콘	신남호	충주시 대소원면 증원대로 4052	레미콘	853-1743	
대림씨엔에스(주)	남궁재식	충주시 산단2로121	콘크리트파일	853-4364	
대신피씨티(주)	선주성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16-1	조립식암거, 수로암거	855-4500	
동양요업사	김명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길38	토기와	851-4372	
보성요업(주)	배창수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68-4	고압애자	853-6530	
산척기업	홍순기	충주시 산척면 친등박달로 106	벽돌, 기와	853-8932	
성신산업(주)	조천희	충주시 양성면 가곡로 1831	아스콘	854-1971	
성안이엔티(주)	권수길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94-5	건조몰탈, 점토벽돌재	016-409-0675	
(주)수담텍	신상훈	충주시 신니면 덕고개로 209	콘크리트블럭	851-4141	
중앙산업(주)	이한희	충주시 하풍1길 36	아스콘	851-0123	
중앙아스콘(주)	김교학	충주시 살미면 문강로 202	아스콘	851-1440	
증원콘크리트	최경덕	충주시 양성면 와평1길 57-32	조립식피씨암거	010-9805-7373	
진성레미콘(주)	이원순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로 456	레미콘	848-0881	
충주후형스레트	이희용	충주시 팽고리산길 77-21	기와, 벽돌	847-2978	
필하우스	김중란	충주시 양성면 가느계길 56-4	맨홀, 수로관	010-3301-6238	
한라엘컴(주) 충주사업소	이형신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308	레미콘	856-8200	
금강레미콘(합)	김현성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2길5	레미콘	644-6000	
동일산업(주)	김현석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2	레미콘	651-2000	
동진레미콘(주)	박재수	제천시 송학주천로106(고암동)	레미콘	646-7000	
모란토건	박성준	제천시 수산면 산곡길16(산곡동)	벽돌및블럭제조, 콘크리트관 및 조립주교재	645-7869	
선명산업(자)	정연우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119	레미콘	646-6000	
(주)한국레미콘	김옥자	제천시 원강저로 18 (강제동)	레미콘	648-0433	
(주)클레이맥스	차정만 안지훈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 454	블록(바닥재, 도적재, 미장재, 타설재)	643-5176	
(주)한일레미콘	박정돌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199-3	레미콘	648-3003	
한국레미콘	김옥자	제천시 원강저로 18(강제동)	레미콘	648-0433	
한진레미콘	김영희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14길37	레미콘	645-2159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화신토건	최화진	제천시 세거리로 71	벽돌, 맨홀등	643-0457	
중앙레미콘(주)	이성노	청원군 문의면 미천고은로 69 외 6개 주소	레미콘	297-2751	
중앙레미콘(주)	이성노	청원군 문의면 미천고은로 69 외 6	레미콘	297-2751	
(주)현경레미콘	박장규	청원군 남이면 연청로 1263-16 외 12개 주소	아스콘, 레미콘	275-7676	
한라엔컴(주)	이은시	청원군 남이면 부강외천로 372 외 6개 주소	레미콘	275-0941	
(주)서일기업	박충기	청원군 남이면 저산척북로 528 외 3개 주소	레미콘	269-0846	
옥산레미콘(주)	권광택, 권오성	청원군 옥산면 국사오산로 589-20 외 4개	레미콘	260-2222	
한영레미콘(주)	양경석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346-1	레미콘	241-3600	
한일산업(주) 청원공장	백승두	청원군 강내면 부용남이길 231-29	레미콘	237-8340	
동양레미콘(주)	윤택진	청원군 옥산면 국사오산로 344 외 1개 주소	레미콘	235-6622	
금성네트(주)	석명용	청원군 오창읍 성산2길 36 외 3개 주소	레미콘	218-9400	
(주)한덕	박동우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63 외 3개 주소	레미콘	218-3335	
진성레미콘(주)	이원순, 김근철	청원군 내수읍 원내길 51 외 11개 주소	레미콘	216-8484	
(주)청주금성	김영욱	청원군 북이면 대울내추길 112 외 5개 주소	레미콘	214-5555	
(주)알엠씨	전홍섭	청원군 강내면 연정모연길 7	레미콘		
우리도시산업(주)	정삼목	청원군 남이면 사동길 17 외 1개 주소	레미콘	031-502-5115	
(주)창대종합콘크리트	이봉주	청원군 북이면 대울내추길 217-5 외 4개 주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제품	217-5857	
보문콘크리트	최수정	청원군 옥산면 오산가좌로 290-11	콘크리트맨홀, 수로관	260-2250	
(주)디앤디에코텍	강성실	청원군 미원면 단재로 2800 외 2개 주소	옹벽블록, 수도관맨홀	218-6010	
(주)금호콘크리트	하정현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285	맨홀, 식생블럭, 수로관	212-0913	
죽암아스콘	박미영	청원군 현도면 죽암도원로 17 외 2개 주소	콘크리트맨홀, 집수정		
그린블럭(주)	이선희	청원군 북이면 추화리 36-19 외 9 필지	콘크리트맨홀, 블럭	836-2505	
대성개발(주)	이윤희	청원군 옥산면 환희1길 206 외 17개 주소	아스콘	260-1840	
우리도시산업(주)	정삼목	청원군 남이면 사동길 197-7 외 2개 주소	아스콘	269-2688	
익산건설(주)	장석재	청원군 옥산면 환희2길 50-17 외 6개 주소	아스콘	260-1070	
옥산아스콘(주)	권광택	청원군 옥산면 국사오산로 589-20 외 3개	아스콘	260-1775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합자)해룡	곽사해	청원군 현도면 죽암도원로 119-23	아스콘	260-5224	
서일아스콘(주)	김동화	청원군 남이면 저산척북로 528 외 6개 주소	아스콘	269-0846	
석광아스콘(주)	박선웅	청원군 내수읍 내수2길 43-19 외 4개 주소	아스팔트콘크리트, 칼라아스콘	214-6800	
연성산업(주)	연찬흠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 22-9	콘크리트 블록	212-2319	
삼신종합석재	권기동	청원군 오창읍 여천3길 213 외 2개 주소	석제품, 도로경계석, 우수맨홀	217-0075	
(주)코로텍	문창선	보은군 내북면 성티길 8-4	황토벽돌, 황토분말	542-5005	
(주)한국	최장락	보은읍 남부로 4351-16	레미콘	542-4540	
(합자)미주요업	임성수	보은군 삼승면 우진2길 59-23	황토벽돌	542-0693	
중앙개발(주)	서상학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07	레미콘	544-7557	
중앙레미콘(주)	이성노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07	레미콘	544-7557	
중앙산업(주)	박희자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74	레미콘	543-4303	
충청레미콘(주)	김학성	보은군 내북면 회인내북로 921	레미콘, 맨홀	544-6900	
(주)동원레미콘	송용대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06	레미콘	732-5173	
(주)현암	김홍일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350	레미콘	733-9521	
나래콘크리트(주)	조용래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585	맨홀, 콘크리트제품	733-9972	
대산에코산업(주)	박용길	옥천군 동이면 적하길 30	벽돌, 블록	731-3447	
옥천레미콘(주)	전새은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76	레미콘	731-3034	
우성아스콘산업(주)	이원욱	옥천군 이원면 건진2길 57-21	아스콘 등	732-3932	
(주)경용	김재수	영동군 심천면 금강로 3026	레미콘	742-7411	
대동산업(주)	이정주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998	아스콘	742-7426	
대한레미콘(주)	정운택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332	레미콘	742-8001	
대한아스콘(주)	오병택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1330	아스콘	742-7142	
성화산업(주)	황정하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 1096	벽돌, 블록	742-1994	
신아산업개발(주)	이승섭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	콘크리트파일	744-2962	
일양아스콘(주)	문종식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105	아스콘	742-1253	
(주)일양	문종식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31-105	레미콘	742-1253	
백산콘크리트(주)	장호준	영동군 영동읍 기골로1길 7	벽돌, 블록	744-0700	
대영에코(주)	이상진	영동군 황간면 영동황간로 1850	원형맨홀	745-880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증평기업사	박성현	증평군 증평읍 협업단지길 10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836-5900	
풍남레미콘(주)	정성화	증평군 도안면 모래재로 78	레미콘	836-7805	
대형산업(주)	강병욱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258-10 외 20	철근콘크리트V,R관 외	053-5329800	
동창콘크리트	이용희	진천군 초평면 구정로 451 외 8	콘크리트블록, 수로관, 맨홀	836-2601	
(주)대아산업	장권	진천군 문백면 송강로 180	아스콘	532-2901	
(주)동평	김진원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 648 외 8	PC-압거	031-478-5730	
(주)성연	홍성삼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160-9번지	아스콘	532-5530	
(주)에코탑	최경영	진천군 문백면 송강로 217	콘크리트블록(다공성블록)	535-9333	
경원콘크리트	박성준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292-13 외 3	콘크리트벽돌, 속빈콘크리트 블럭, 호환블럭	532-2636	
금성개발(주)	신현창	진천군 문백면 태락2길 39 외 17	레미콘,아스콘	532-7009	
금성개발(주) 제2공장	신현창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532번지	아스콘	532-7009	
동성산업(주)	최재욱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1482	레미콘	838-1335	
진천레미콘(주)	조 환 이인석	진천군 덕산면 이덕로 708	레미콘	532-9470	
천만산업(주)	박미자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511-74 외 1	아스콘제조	532-1457	
한일산업(주)	백승두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384 외 3	레미콘	536-4900	
흥진산업(주)	정인수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 151 외 4	ASCON	534-2728	
(주)괴산레미콘	이기성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96번지	레미콘	832-1701	
(주)대명콘크리트	김세호	괴산군 청안면 금평로 458	콘크리트 수로관, 옹벽블럭	834-0178	
(주)청오아스콘	하용간	괴산군 청안면 백봉길 11-8	아스콘	832-6116	
(주)홍익	이은희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468	적벽돌	832-3630	
(합명)남부산업	변광섭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661	콘크리트수로관	836-1151	
(합자)동서콘크리트	이강협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670	콘크리트수로관	836-9903	
괴산아스콘(주)	이 용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309	아스콘	834-0690	
서일세라믹	박재구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검송7길 81	적벽돌	833-0991	
중앙레미콘(주)	이한희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309	레미콘	834-0690	
청주 아스콘	이종득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594	아스콘, 재생아스콘	832-3600	
(주)가야콘크리트	정진철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144	콘크리트맨홀, 콘크리트플류관	883-0158	
(주)대북	이상준	음성군 감곡면 오궁길 56번길 38 외 3개 주소	맨홀, 수로관	011-461-5730	
(주)모든콘크리트	유영욱	음성군 망동면 원중로 1544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	883-2265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삼성레미콘	김광범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234	레미콘	877-2057	
(주)석진레미콘	박준열	음성읍 새말길 26-31 외 2개 주소	레미콘	872-1580	
(주)석진산업	최병운	음성읍 새말길 7-7 외 3개 주소	레미콘, 아스콘	872-1581	
(주)성안	유승구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40 외 4 필지	레미콘, 시멘트블럭, 시멘트벽돌 등	883-7890	
(주)성안아스콘	김영철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809 외 4개 주소	아스콘	883-7895	
(주)신성	김우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42-58	욕조, 세면기	877-5757	
거산산업	김상식	금왕읍 초금로495번길 9-2 외 3개 주소	맨홀, 수로관	011-9828-1063	
동양산업	임선미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6-8 외 2 필지	맨홀, 수로관	011-482-7560	
동일콘크리트	이한명	음성읍 소여리 산 165-1번지 외 2 필지	콘크리트벽돌블럭	872-1337	
동현산업개발(주)	박재관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98 외 8개 주소	아스콘	882-4400	
삼서공업(주)	나남열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53번길 123, (삼정리 722-12) 외 2개 주소	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맨홀철재받침용높이조절재	877-8272	
삼우토건	윤 신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399 외 1개 주소	콘크리트벽돌, 블럭	881-3386	
인터바스(주)	박현순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537번길 102 외 6개 주소	위생도기	878-0171	
중앙레미콘(주)	정행석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042 외 10개 주소	레미콘	879-8032	
중앙산업	이승훈	음성읍 용광로 229	벽돌블럭	872-3076	
태창레미콘(주)	안영복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462-1	레미콘	882-5111	
태창산업(주)	박양기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462	아스콘	882-5111	
한라엔컴(주)	이은시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742 외 9개 주소	레미콘	877-2747	
한아름 산업	김치성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589	맨홀, 수로관	011-223-4070	
금수산황토산업	이근우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1008 (임현리)	황토벽돌	423-6567	
대성토건	조부현	단양군 단양읍 상진20길 22 (상진리)	기와벽돌	422-0351	
대신레미콘(주)	김현성	단양군 매포읍 영천3길 128 (상시리)	레미콘	421-3100	
성원콘크리트(주)	장태순	단양군 직성면 금수산로 227 (기동리)	레미콘	422-7555	
(주)미창	최진영	단양군 어상천면 의병대로 1286-23(연곡리)	황토벽돌, 모르타르	423-9600	
(주)삼덕레미콘	이상우	단양군 매포읍 응실길 29 (어의곡리)	레미콘	421-5570	
(주)우덕레미콘	소신자	단양군 가곡면 고수재로 471 (사평리)	레미콘	421-2700	
합자회사효신아스콘	차대석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1로 178(우덕리)	레미콘	423-779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1차 금속					
(주)일산금속	이상중	청원군 남이면 척산1길 14	주철재맨홀뚜껑, 주철판넬, 강주물기계부품	269-2311	
(주)대광주철	최재석	보은군 산외면 산외로 126	맨홀뚜껑, 가로수 보호덮개	542-3855	
(주)대전중상이 용사촌 자활복지공단	박현주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133	도복장강관	536-0028	
건일산업	이규행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84번지 외 1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537-8100	
명진공영(주)	양대권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431 외 1	주철이형관	537-8686	
주성이엔지(주)	윤영주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560-4 외 4	강관류	532-4501	
유화강관(주)	김희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887-23번지 외 7	강관	534-2114	
한백종합철강(주)	이원석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181번지 외 1	도장강각관, 아연강각관, 블랙강각관	532-5338	
현대메탈(주)	이인행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685	피형강관, 철근코팅	877-4378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거성산업(주)	최현구	청주시 흥덕구 가장로 333 (장암동)	알루미늄창틀	293-8348	
길상건설(주)	김광선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233번길 51 (주중동)	알루미늄샷시	212-9711	
남선산업개발(주)	남기옥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28 (우암동)	알루미늄 창호	253-8640	
남천산업	오경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18 (송절동)	금속탱크, 열교환기, 닥트, 산업기계	264-9738	
대림샤시	이은경	청주시 흥덕구 고락로 21, 3동 (지동동)	알루미늄샤시문틀, 하이샤시문틀	011-9418-9223	
대흥아이엔디(주)	김용욱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67 (주중동)	탱크류, 용기류	215-2666	
오케이산업(주)	윤서연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35번길 43 (봉명동)	도로표지판	274-6852	
우암건설	전만수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19-2 (주중동)	알루미늄샷시	212-9779	
인스산업개발(주)	김현호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150-82 (정상동)	도로표지판	217-5101	
(주)가이텍코리아	윤석수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29 (우암동)	디자인웬스, 그레이팅	042-822-4380	
(주)길원테크	이희찬	청주시 흥덕구 문암로 256 (문암동)	웬스, 시설물	277-8781	
(주)서흥	이재정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424-7(오동동)	물탱크	231-6876	
(주)성신이엔지	김성덕	청주시 흥덕구 성화로69번길 43-58 (죽림동)	알루미늄샷시	232-6706	
(주)신창테크	조돈휘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409호	수문용부품	296-0488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오로라산업조명	정희숙	청주시 흥덕구 대림로 391(죽림동)	스텐가로등주	252-9001	
(주)청수산업	김수일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233번길 166. 가동 (주중동)	수문	212-3900	
(주)한도공영	송원호	청주시 흥덕구 강촌로 209, 제1동 (서촌동)	고정프레임, 도로표시판, 금속조립식구조물 등	263-1161	
청주철망	권선관	청주시 흥덕구 성화로69번길 43-4 (죽림동)	철망, 와이어메쉬	256-4540	
키친탑조리기기	원신호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754번길 14 (석소동)	쌍크대, 조리대	291-7464	
(주)거북표싱크	박형래	충주시 주덕읍 주덕농공길 65	물버림대, 개수대, 조리대	848-7356	
금성철망공업(주)	최성희	충주시 살미면 월악로 165-10	돌망태계비온	852-6570	
(주)동성진흥	김한주 김득연	충주시 주덕읍 후삼로 236	방음벽, 방음판	032-783-8131	
미도건설(주)	이호식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1길 125	도로표지판	844-5762	
다산기업(주)	윤재근 김은희	충주시 신니면 수월2길 9	가드레일	857-0008	
(주)대현이엔지	현석호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568-1	pc암거용거푸집	852-9262	
(주)알케이	김천학	충주시 대소원면 탄옹리 산66	LED조명	011-324-3467	
중앙강건(주)	김제국	충주시 상방3길 31-1	금속표지판	852-5852	
진우정밀(주)	김기선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28-18	슈(콘크리트파일용)	853-2333	
청운이엔지	유금천	충주시 대소원면 용관길 54	금속표지판	857-9966	
(주)예찬	정유권	충주시 엄정면 세고개로 92	PC암거용거푸집	010-6848-7728	
(주)월드에스티	윤상식	충주시 대소원 영평리 574	방음벽지주, 휨스 등	031-8059-2941	
대한 컨테이너	권기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91-40	컨테이너 제작	652-9600	
송비콘크리트(주)	김영민	제천시 강저로4길22(강제동)	맨홀블럭, 스틸그레이팅	643-7070	
(주)대현산업	임근섭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500-8	알루미늄창호	651-1187	
(주)에스엠라이팅	최원근	제천시 고암동 145-8	LED보안등		
중앙엔지니어링(주)	김윤철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664	설치용금속탱크	653-8417	
(주)남경 청원지점	김철기	청원군 오창읍 괴정길 15-8	수문, 가동보	838-3595	
(주)중앙건설	남정석	청원군 남이면 양촌2길 56 외 2개 주소	알루미늄샷시, 창호	297-7533	
현대상사	강희욱	청원군 남이면 남석로 59 외 4개 주소	알루미늄 샷시, 철문	269-2228	
철인산업개발(주)	이선호	청원군 북이면 서당길 163	알루미늄창	223-910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성원산업	이흥현	청원군 오창읍 괴정길 15-13	알루미늄창호, 철재방화문	217-6233	
(주)현진엔지니어링	김기호	청원군 오창읍 신평중신길 101-33	수문	211-5399	
대청산업가동보(주)	임근혁	청원군 남이면 시목외천로 458-15 외 1개 주소	회전식 반달형 가동보, 자동수문, 수문	241-9600	
(주)선재이엔지	오미희	청원군 오창읍 중신리 134-1 외 2 필지	알루미늄샷시문틀	010-3439-0011	
두원금속	이전	청원군 남이면 남이외천길 39-12 외 4개 주소	알루미늄창호	260-6019	
(주)아사히알텍코리아	김문강	청원군 남이면 남이외천길 48	알미늄샤시	268-4885	
가경공사	신향영	청원군 남이면 남이가좌1길 12	알미늄창문및창틀	011-468-4264	
청송샷터	박성귀	청원군 문의면 남계길 63	알루미늄샷터	250-1968	
(주)청우에스이	채철호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258-2 외 2개 주소	금속판재및공작제품	269-1116	
(주)아리산업	한정구	청원군 북이면 신대석성로 91-67	알루미늄 난간	237-7470	
(주)다진산업	김승기	청원군 오창읍 여천3길 202 외 2개 주소	조립식 판넬	217-0105	
(주)성화웬스	강계중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535	울타리웬스, 철망	212-6342	
(주)제이엘	박은영	청원군 가덕면 행정노동길 38-39	조립식구조물, 울타리	255-4524	
강우이엔지	이종성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528	컨테이너	532-0961	
(주)경록기업	이윤미	청원군 가덕면 병암4길 21-9 외 3개 주소	자동수문, 가압물탱크	291-9800	
(주)나우엔텍	김상식	청원군 북이면 의암로 326	가로등주	286-7421	
(주)광성이엔씨	박노성	청원군 현도면 죽암도원로 169	난간교량용품	271-6100	
이한맨홀	이원태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271-8 외 1 필지	신호등 철주 및 기타 철구조물	241-2121	
(주)운하산업	이인환	청원군 오창읍 중신리 94-1번지 외 1개 주소	조립구조재	011-9480-1165	
(주)친환경산업	홍미선	청원군 내수읍 학평길 71 외 1개 주소	수문, 자동수문	213-9239	
(주)성원안전	나재술	청원군 북이면 내수로 1796-54	낙석방지망	215-6052	
하늘테크	김종민	청원군 옥산면 신촌길 71-7 외 3개 주소	스텐레스, 가로등	447-0500	
신성주차 제작공사	박수옥	청원군 현도면 죽전1길 48-14	주차대		
진우건설(주)	이종성	청원군 오창읍 팔결로 569	콘테이너	532-0961	
(주)동방하우스	김금숙	청원군 내수읍 도원세교로 113-22	콘테이너, 조립식벽판, 스틸하우스가공판	010-9416-6601	
(주)우하	우화섭	청원군 남이면 대림로 59-29	웬스, 가드레일, 승강장, 표시판	266-0950	
충북주택	허태영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832-7	콘테이너박스	214-2297	
한일컨테이너	박진택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410-20	컨테이너	214-9003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삼성콘테이너	권종호	청원군 현도면 현도시동길 32	콘테이너 박스	260-3355	
한국철강산업	김동환, 송준영	청원군 옥산면 금계장동로 137 외 6개 주소	콘테이너	011-491-2000	
(주)대한	박평권	청원군 오창읍 후기길 282	조립식건물판넬	211-8334	
(주)대한환경	박노석	청원군 북이면 장양2길 81-1 외 3개 주소	금속탱크	218-6222	
노성셀링(주)	노좌식	청원군 북이면 장재금대로 73	탱크, 절재문, 자유저장탱크	214-7597	
송원플랜트	송일기	청원군 강내면 서부로 489	압력용기, 탱크, 배관설비	237-1567	
그린테크	최중원	청원군 북이면 용계내추로 436-24 외 6개 주소	PE정화조	011-278-1772	
금호화성	장충권	청원군 남이면 저산척북로 403	세면기, 방수판, 욕조, 카운타	269-1723	
에스비산업	이병섭	청원군 오창읍 여천3길 143	도금제품(가드레일, 방음벽)	215-4901	
웰텍	이광래	청원군 오창읍 성산길 16-46	크레인, 고소작업차 붐	260-4244	
(주)새롭친환경	김복용	청원군 가덕면 국전길 18	철선조립제품	288-9599	
(주)성호스틸	임성호	청원군 북이면 용계내추로 463-23	철선, 철망, 금속조립	211-7536	
(주)성호스틸2공장	임성호	청원군 내수읍 풍정3길 34	용접철망	211-7536	
대영산업	김종대	청원군 오창읍 일신길 23-19 외 2개 주소	싱크대, AL판 가정용품	217-2735	
대건산업	황명순	청원군 오창읍 원리여천길 184	주방용코너대	217-7599	
삼정산업	한정환	청원군 가덕면 상장인차로 430 외 1개 주소	원형, 삼각 표지판	294-5012	
천조철강산업(주)	송명호	청원군 오창읍 화북로 941 외 1개 주소	철자재, 철구조물, 건축용철골	217-7811	
(주)세움이엔지	신범식	청원군 옥산면 성재사정로 87-6 외 2개 주소	알루미늄 / 하이샷시 문틀	235-7663	
(가칭)성재하이샤시	박병환	청원군 오창읍 성재2길 39-57 외 2개 주소	알루미늄 및 하이샷시 문틀	010-4428-2927	
가칭 삼삼하이샤시	김선진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404-35	알루미늄 하이샷시, 문틀		
(주)엠텍	이규석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564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용 모르타르와 판넬	218-0028	
금원산업	송철수	청원군 남이면 남석로 104-36	전기컨넥터, 개폐기	260-2053	
(주)원일산업	변수섭	청원군 오창읍 성산1길 25-4	디자인헬스, 차도용난간, 교량난간, 가로등주 등	298-1051	
한국기연(주)	박종남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1341	산업용기계 (리프트, 콤파이어, 와이더 등)	276-6965	
(주)엠에이전기조명	이성욱	청원군 북이면 대울리 255-4	가로등주, 조명기구	212-0988	
영운기공	김한배	청원군 현도면 청남로 257	철재거푸집, 호이스트	260-1133	
(주)규진건설	이동욱	청원군 남이면 갈원상발길 212-25	울타리헬스, 난간, 신축이음장치	233-5972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금성엔비텍(주)	이태식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	보일러 압력용기, 환경설비(집진시설)	233-7424	
칠철기업	박창규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1315 외 3개 주소	배전반 및 철재분체도장	218-7708	
청원선재	안봉근 안재근	청원군 현도면 현도시동길 75 외 4개 주소	식생매트, 개비온(철망)	269-3226	
성대건설(주)	김성대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660	금속 알루미늄창호, 합성수지 플라스틱창호	213-7346	
주식회사 청천하이테크	서성만	청원군 강내면 서부로 621	가동보, 어도, 수문	222-4006	
청옥산업(주)	김용순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582-10번지	자동수문, 가동보, 수문, 권양기	277-8811	
(가칭)금암도어산업	조태근	청원군 북이면 금암길 16-8	철제난간 금속문 금속간판	010-3254-2199	
삼원전기	김상원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335-2	교통신호등철주	272-0088	
(주)엠에스케이티엘	강명서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247-15	주조설비(사처리라인), LED조명기구, LED조명용 전원장치, 가로등주	277-5165	
성진엔지니어링(주)	오세인	청원군 남이면 저산척북로 413 외 1개 주소	직관, 연결관, 물탱크, SCRUBBER, DUCT, PIPING, 철구조물 등	260-3640	
정수기계공업	김윤성	청원군 내수읍 학평동정길 34	수문, 문비, 문틀, 권양기, 산업기계	214-4293	
바이디 보은공장	변규병	보은군 보은읍 둔덕수정로 233	철재도어	543-2513	
영신철망	정균철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195-22	철망류	542-0317	
중부철망	조세형	보은군 보은읍 병원용암길 134	용접철망, 돌망태	543-1687	
(주)남영엔지니어링	강영성	옥천읍 옥천동이로 261	자동수문	277-1747	
(주)상현선재	조달형	옥천읍 옥천농공길 76	용접철망, 돌망태	733-6734	
(주)신창테크	조돈휘	옥천읍 옥천동이로 261	자동수문	296-0488	
(주)아사히	정광호	옥천군 동이면 적하2길 22	알루미늄샤시	731-7320	
(주)자연과빛	이경찬	옥천읍 옥천농공길 53-10	버스승강장		
(주)케이알티	김인태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50-2	스텐 가로등주	733-9135	
(주)토정이엔지	조동제	옥천군 동이면 평산3길 7	웬스, 건축자재	231-5046	
금정이엔지	김윤한	옥천읍 삼청2길 80	가로등주	429-5673	
대양스포츠산업	박형호	옥천군 군북면 자모길 24	체육시설물, 운동시설물	733-4970	
에이텍산업(주)	길동우	옥천읍 옥천농공길 80-9	방음벽	733-3481	
오승철망공업사	오만근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 31	철망 등	733-4605	
한미산업(주)	정보화	옥천군 동이면 지양2길 16	조립식건축자재	731-9008	
현대철망(주)	서영창	옥천군 군서면 동평3길 45-13	수로철선	733-6215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형제콘테이너	이범숙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355	콘테이너	731-2262	
남경토건(주)	장광자	영동읍 상부용로 8-7	알루미늄창호	744-1244	
명성철망(주)	이명열	영동읍 금동로 104	와이어메쉬, 철못, 철선제품	743-9555	
명진스틸하우징	박정여	영동읍 산막골길 39	콘테이너	745-5654	
(주)에넥스	박유재	영동군 황간면 에넥스로 37	씽크대	742-4180	
제일공업(주)	박진구	영동읍 금동로 140-1	씽크대	744-4028	
(주)제이피산업	박순업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 1580-3	금속탱크	010-8988-1988	
도안농업기계	박노식	증평군 증평읍 하평로 29	금속탱크	836-8385	
(주)다운	연봉흠	진천군 이월면 증미로 93 외 2	나선형 파형강판, 콘크리트 플룸판	534-4385	
(주)부스타	이병희	진천군 이월면 고등2길 18	보일러	536-9107	
(주)씨에스텍	이홍룡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252-3 외 10	커튼월창호, 방음판 및 방음벽	010-6520-0051	
(주)중부특장	정동길	진천군 이월면 성중로 261	철탱크, 스텐탱크	534-0202	
(주)진광테크	이종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1	가로등주, 등기구, LED 조명(램프) 등	535-8782	
(주)천일	권우상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118 외 4	주방용품 씽크대	533-1150	
두솔메카트로닉스	두상수	진천군 이월면 용사길 19-9	승강기, 콘베이어	534-0225	
성보시터(주)	이홍희	진천군 광혜원면 살천이길 70	컨테이너		
썬플랜트기술(주)	이경구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 2	보일러, 압력용기	032-623-0800	
재영테크(주)	정유선	진천군 덕산면 귀농1길 45-4	가로등주 및 버스승차대	537-8797	
태송산업(주)	이종성	진천군 광혜원면 살천이길 70	콘테이너		
홍창플랜트	정태림	진천군 이월면 물미길 28	증기보일러	537-4905	
(주)거츠	구수본	진천군 이월면 신정길 74 외 1	용접철망, 휨스자재, 보통철선, 돌망태	536-3412	
(주)삼진넥스틸	양종빈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121	콘테이너조립식주택	5345673	
(주)서경	조진경	진천군 이월면 성중로 391 외 1	크린룸 패널, 샤시베이스	5348800	
(주)서호아트개발	김종섭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6	패널 및 강판	532-1061	
(주)성우선재	조태자	진천군 덕산면 이덕로 754-1 외 4	스텐레스선재	010-6331-0633	
(주)성우테크	고종순	진천군 문백면 계산2길 72-78	스텐선, 스텐망, 방충 방범창틀	010-9288-1485	
(주)스마일테크	김종흠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6	패널 및 강판	532-4662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진장산업개발	김혜경 외 1인	진천군 광혜원면 살천이길 51 외 3	와이어메쉬, 철망	011-330-7001	
대명그레이팅(주)	김종한	진천군 덕산면 석장1길 28 ((주)대명그레이팅) 외 2	스틸그레이팅	536-7600	
선강산업(주)	주영희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247-9 외 1	wire mesh, flume mesh	536-6891	
세움모빌(주)	김양희	진천군 이월면중산리 중산리623-4	콘테이너	533-7966	
씨앤제이스틸(주)	장석운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960-5번지 외 1	알루미늄샷시		
와이에스공영(주)	오정미	진천군 진천읍 상신2길 128-7	개스대, 조리대, 씻크대부품(스테인레스)	011-262-7830	
울트라건설(주)	강현정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길 35-10	주차구조물	535-5340	
유진철강산업(주) 제2공장	유재왕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136 외 3	구조용강관	532-1754	
태운산업	강정자	진천군 이월면 월촌1길 88 외 2	원형 그레이팅, 환풍용 그레이팅, 우수받이 그레이팅	010-690-8241	
한국플랜트	김병학	진천군 이월면 성중로 340-10	축열식소각장치, 교반탱크, 철구조물	010-3705-0404	
(주)새롬친환경	김복용	괴산군 사리면 화산재로 204	돌망태, 와이어메쉬	288-9599	
(주)위트	박연규	괴산군 불정면 문무로 516	알루미늄 창호	833-9277	
(주)티씨아이	황보석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128	주차설비금속구조대	838-8004	
성호헨스	김석호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 87번지	용접철망, 체인링크철망		
주식회사 동우	문동훈	괴산군 불정면 소이로 710-4	알루미늄 새시	017-201-1792	
중부산업	손연임	괴산군 괴산읍 정용길 5	알루미늄 샷시	010-4008-0760	
태성이엔씨 주식회사	박용복	괴산군 칠성면 둔울3길 39	철망	070-4125-9505	
(주)동성에너지	한대성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543	보일러, 온풍기, 전기난로, 석유난로	881-2761	
(주)두우종합기술단	장두형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670	항온항습기	881-0702	
(주)미맥스	이상일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678 외 1개 주소	알루미늄 창호, 자동문	010-9208-7523	
(주)새한테크	이인규	음성군 생극면 생리 509-1번지	천정크레인, 벨트콘베어, 통신가설차, 철구조물철구조물	881-6228	
(주)신성에프에이	조상준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438-38 외 1개 주소	Clean Room, 항온항습기	879-4312	
(주)에코스텍	정정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 335-43	물탱크용 철재보강재	031-911-0627	
(주)영인	정재경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65-3 외 1개 주소	콘베이어, 광차	877-5225	
(주)인코이앤이	이성철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89	밸브, 집진설비	877-2089	
(주)일승이엔씨	김근재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104	주차설비제조 및 제작	883-7767	
(주)일진금속	최민섭	음성군 소이면 충청대로 2031번길 58-16	스텐레스파이프	872-300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케이케이글로벌 인더스트리	이재규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242-40	스테인레스 씽크, 플라스틱 배수구	533-6926	
(주)칠칠산업	박종태	음성군 금왕읍 명심이길 264번길 23 외 2개	형강류, 파이프, 철판	010-9436-5269	
(주)하나엔텍	서두원	음성군 생극면 대금로 1994	자외선소독기, 탈취기, 압축기, 컨베이어, 크레인	878-8894	
(주)하이퍼윈도우	홍성철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380 외 15개 주소	알루미늄창	878-8751	
(주)한국철망	윤인명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127	와이어매시(용접철망)	877-2516	
(주)한양공영(제1공장)	이종찬	음성군 대소면 쇠머리길 67 외 2개 주소	알루미늄샷시, 창호	881-0123	
(주)한판넬	임한규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 86 외 1개 주소	조립식판넬	878-0983	
(주)화인이노베이션	박병선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89	전자집진기, steel stack, turning roller	881-1270	
(주)효진산업	윤진효	음성군 음성군 삼성면 대덕로 63-82	알루미늄 난간	02-408-5770	
나이스테크	이효철	음성군 원남면 하노길53번길 36 외 7개 주소	알루미늄샷시	010-5387-1041	
대성산업	김명자	음성군 생극면 임곡리 19 외 1 필지	알루미늄 샷시	011-468-1122	
덕용산업	한순자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213	알루미늄샷시	011-717-2632	
동보비앤피	이혜숙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 52-1 외 2 필지	압력탱크(보일러용)	010-3044-8656	
동성컨테이너	서동신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1064-3번지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016-539-3335	
삼우기연(주)	안병원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342 외 3개 주소	스텐난간, 크레인웨이트, 교면배수시설	877-5697	
생극창호	이선우	음성군 생극면 임곡길 314 외 1개 주소	알루미늄창호	011-468-3500	
서진정공	박정수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62-46	철맨홀	010-5481-7277	
성원정밀	김심성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50 외 1필지	탱크, 열교환기, 포장기등	011-767-1901	
세진산업	안병윤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07-4 외 1 필지	PC몰드	011-491-9975	
억태산업(주)	박역수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87번길 74 외 3개 주소	조립식판넬	877-1651	
영수산업	추연수	음성군 대소면 대물1길 6-14 (오류리 818)	저장탱크, 컨베이어장치	882-8906	
용인산업	이원발	금왕읍 각구실길45번길 105-56 외 6개 주소	알루미늄 새시	873-6651	
월드킵컨테이너	육동식	음성을 용광로 191	컨테이너	872-1650	
유영스틸	유영준	음성군 대소면 오대로 116번길 225-15 외 6개	알루미늄창문, 건축외장재, 플라스틱성형제품	010-8855-3207	
음성샷시	김기화	금왕읍 생삼로 207번길 160-7 외 2개 주소	알루미늄 샷시	019-220-4781	
이안씨엔에스	조남오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189	도로안전시설물	011-387-7714	
일진산업(주)	유형주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364-14	알루미늄샷시, 유로폼, 타워크레인	873-8221	
조양전기공업(주)	박현숙	음성군 원남면 원소로 37번길 31	조명기구, 가로등주	872-925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중부콘테이너	김학수	음성군 원남면 하당길 13 외 1개 주소	이동식건물(콘테이너)	872-656	
창원산업	이유순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23	조명타워, 옥내·외조명장치, 플라스틱성형품	877-7389	
충북철망	이득노	음성읍 반기문로 18	와이어매쉬	873-0880	
투케이창호시스템	김영일	음성군 감곡면 오갑길192번길 30-27	알미늄샷시	877-2020	
평산에스아이(주)	이종화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 428-4 외 7개 주소	파형강판	877-6091	
평산에스아이(주) 제2공장	이종화	음성군 감곡면 감노로 428-4	파형강판	877-6091	
한양오토텍	조운수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23-2	알미늄창문	882-0079	
현대샷시	김정태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07-5	알루미늄 창호	010-9814-1234	
황송산업	유영만	음성군 금왕읍 삼봉길 162	알미늄 창문	011-485-1456	
GB산업	강정임	음성군 생곡면 신덕로 37-13 외 2개 주소	돌망태(철망)	011-472-871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벨로스테크놀로지(주)	김주환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송정동) 폴리텍대학 창업보육센터 205호	cctv카메라	217-7133	
에스콤아이엔씨(주)	홍필식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79번길 22 (북대동)	감시카메라, 방송통신주변기기	232-1105	
(주)네스정보기술	한철용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32 (용암동)	스피커, cctv	285-0001	
(주)삼성항공정보통신	윤태옥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214호	보안용카메라 등	275-0002	
(주)에이젠	최홍수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98번길 143 (송정동)	감시카메라	273-1103	
(주)엔씨미디어 정보통신	노영민 최용호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161번길 58 1층 (용암동)	CCTV/스피커	288-1007	
(주)인에스	정봉훈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912호	CCTV, 유선통신장비	272-6635	
(주)한우리	임미송 권순호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3번길 82 (수동)	cctv, 버스정보안내기, 정보표출장치	217-1793	
태웅전기통신(주)	정상군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41 (송절동)	구내방송장치, 영상감시장치, 전광판	231-9000	
신화전자시스템	양은미	충주시 철지2길 6	방송장비, 폐쇄회로	854-0626	
(주)아이티이엔지	김명수	충주시 사직산14길 36-2	방송장비	852-5182	
에이빗코리아	김영춘	충주시 상방1길11(봉방동)	CCTV및 주변기기	846-2002	
(주)프로엔지니어링	김명중	제천시 내토로757(장락동)	CCTV, 방송장비	651-8869	
대신네트웍스	전덕홍	제천시 성봉로8(청전동)	CCTV, 방송장비	652-0004	
자화전자(주)	김상면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217 외 13개 주소	전자부품, 통신키기부품, LED조명	210-7113	
청솔이엠아이(주)	이미화	청원군 옥산면 신촌길 82	스피커, DVR시스템, 자동제어반	275-7204	
(주)컴앤씨	이정행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577-3 외 5	PCM다중화장치	532-140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리더스테크놀로지	정현수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402호	제어장비, 배전반	274-2223	
삼우테크주식회사	김용렬	청주시 흥덕구 남촌로 21 (남촌동)	자동제어시스템	231-3601	
씨에스산업	김판수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49 (송정동)	수도계량기 등	271-9722	
코니트	황정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31번길 8-2 (북대동)	유량계 계수부	285-5449	
혜성산업	박순규	충주시 업정면 울누리 산58-1 외 3필지	전력량 원격검침시스템 장비	011-464-5470	
(주)우림	김 균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1-11	자동제어시스템, VOC처리장치	218-7101	
주식회사 나로테크	정기운 최양규	괴산군 청안면 조천로2길 34	유량계	031-720-5490	
(주)그린플로우	송행숙	음성군 생곡면 신덕로 37-9	계측기기, 자동제어반, 유량계	010-9708-1248	
하나엔지니어링	이동수	음성군 생곡면 음성로 1494-23 외 2개 주소	유량계	02-2625-2717	
전기장비					
경운전기	전재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79번길 22, 12호 (북대동)	수배전반	234-5777	
대림전기	황태인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4 (봉명동)	수.배전반	267-9966	
대영통신(주)	이동우	청주시 흥덕구 대림로 426-10 (죽림동)	스마트블라드, 블라드전자제어, 통신감시제어장치, 경관조명장치	294-4335	
대우기전	문광호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401호	산업용자동제어설비	272-6992	
대흥전자	김효성	청주시 상당구 새터로 132 (내덕동)	UVLED 기능성램프	257-0146	
동일산전(주)	이복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404번길 41 (송절동)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262-9531	
동일엔지니어링(주)	이일섭	청주시 상당구 발산로 105 (사천동)	배전반	216-4455	
동일전기	김영식	청주시 상당구 사천로 152번가길 26(사천동)	수. 배전반	218-1840	
동해전기	박천규	청주시 흥덕구 부모산로43번길 14 (비하동)	전기수, 배전반	232-7630	
부민전기	유광석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506호	자동제어패널	233-7381	
삼성기전(주)	지영훈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211-1 번지	수.배전반	276-8096	
삼양산전	이남숙	청주시 흥덕구 신정로 110-50 (송절동)	수,배전반	211-3712	
삼영전기(주)	박장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04(송정동)	배전반	272-2951	
삼일엔지니어링	최춘식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709호	전기변환장치	288-2964	
서울산전	윤중환	청주시 상당구 사천로152번가길 58 (사천동)	수배전반	211-4174	
신일전기공업(주)	임재용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38번길 37 (북대동)	수,배전반	235-2000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에스원테크	석진규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407호	자동제어반	273-2668	
엘에스산전(주) 청주2공장	구자균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01번길 68 (분명동)	변압기, 배전반 등	261-6031	
여명전기	장승덕	청주시 흥덕구 매봉로29번길 37 (부평동)	조명기구	292-7332	
유니트로닉스	박춘식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703호	자동제어반	235-2325	
이맥스	윤병성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504호	자동제어장치	269-4125	
이엠테크	이영숙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314호	콘트롤러 등	070-7163-3787	
이오테크놀로지(주)	이승근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1, 303호 (복대동)	전구및 램프제조(LED센서)	211-0250	
이오테크놀로지(주)	이승근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301호	조명장치 등	211-0250	
(주)대인이앤시	김달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117번길 40-29 (유동동)	수배전반, 자동제어	293-4743	
(주)럭키전기	이원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6번길 75 (신북동)	수, 배전반	262-0785	
(주)로스타크 청주공장	신승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96번길 49 (신북동)	광공용 LED조명장치 및 관련제품	232-5770	
(주)신우라이팅	오진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609호	자동제어반 및 배전반 등	231-5225	
(주)썬전력	박윤희	청주시 흥덕구 동촌로8번길 12 (지동동) 외 1개	수, 배전반	235-9011	
(주)씨티엘네트웍스	천무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55번길 24 (송정동)	LED전구 등	261-1625	
(주)아주엔지니어링	김규희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1번길 86 (분명동)	전기판넬 자동제어반	213-2181	
(주)이비에스테크	임재택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212호	자동제어반	263-4372	
(주)파란자동화	박영문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406호	산업용제어기기	554-8307	
(주)한국중전기	조재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88-1 (분명동)	배전반	266-8501	
(주)한올씨앤에스	신장호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88 (신성동)	배전반제작(배전용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234-2077	
(주)한전기전	이진우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362번길 39 (오동동)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PH농도계측기, CCTV	211-3456	
(주)한전기전 제2공장	이진우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05번길 72 (부평동)	수, 배전반	211-3456	
중앙제어(주)	신상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9번길 54(송정동)	홈조명제어시스템	265-6800	
중원전기	임명호	청주시 흥덕구 동촌로8번길 10 (지동동)	수배전반, MCC, 분전반	238-1800	
첨단제어시스템(주)	김정일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1014호	자동제어반, CCTV	235-1128	
코인스테크(주)	이 우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정동) 809호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272-2181	
콤텍	김정래	청주시 흥덕구 궁뜰로33번길 19 (미평동)	MCC배전반	011-9066-1089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현대중전기	한영수	충주시 흥덕구 3순환로 723번길 125 (죽림동)	수.배전반	265-0241	
미산이엔지	송성석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552	수배전반및자동제어	853-5323	
삼화전기	우명준	충주시 창현로 1449	배전반, 자동제어반	854-4231	
(주)금성전공사	송찬화	충주시 능바우길 80	수배전반및자동제어	843-7273	
주한전기	고주원	충주시 삼원로 12	전기배전반	847-9224	
태경산업	김상순	충주시 신니면 동락길 269	백열전구	851-1626	
(주)충주전기조명	성홍진	충주시 충주호수로 138	가로등, LED등	857-9743	
미산이엔지	송성석	충주시 충주호수로 93	수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011-487-8619	
씨엔아이케이블(주) 제2공장	류인규	충주시 충주호수로 351	전력선, 절연전선	857-5996	
정화TEC	신현두 외 4인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7-10	음식물 처리기	011-9045-0477	
용천전기조명	김수득	충주시 용산동 52	가로등주, 조명장치	852-8884	
(주)서광이엔지	허성태	제천시 강저로4길22(강제동)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644-8996	
(주)미성	최종광	제천시 강저로2길16(강제동)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644-6877	
(주)세화에너지산업	박일순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16-4	태양광가로등	224-1171	
(주)대흥전기공업	박은자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791	변압기	213-9311	
케이에스티파워(주)	김순태	청원군 북이면 용계내추로 28	변압기 후레임	212-4713	
새한트랜스	김해경	청원군 오송읍 오송1길 18-9	연소기구용변압기	041-864-1320	
(주)다우산업2공장	박종관	청원군 옥산면 오산가좌로 468	전기개폐기	236-8560	
우리산전(주)	장길순	청원군 오창읍 중부로 1555	저압기기(개폐기,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217-5835	
디앤에스산전(주)	정성모	청원군 내수읍 청암로 186	배선용차단기, 전기제어장치마그네틱부품	213-6881	
오창산업(주)	박명환	청원군 옥산면 장남길 30-6	전력절감기, 정격방지기, 자동전압조절기		
(주)이엘텍 청원공장	전창수	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986, 배재대학산학협력단 2층~3층	수배전반, 제어반	275-1518	
(주)은성엔지니어링	김정현	청원군 남이면 외천척산길 28-39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269-0900	
(주)은성엔지니어링	김정현	청원군 남이면 남석로 104-38	수.배전반	269-0900	
신성	고광수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314-1번지	배전반, 전기자동제어반	267-9331	
K.S산업개발	조성임 외 1명	청원군 남이면 남이가좌1길 59 외 2개 주소	배전반, 통신단자함	260-5656	
하정전기	최광길	청원군 강내면 학천1길 16	수, 배전반	233-6685	
대현엔지니어링	김홍대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729-11 외 1개 주소	배전반, 수전반, 계기함	214-4130	
서울전기	이몽우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729-11 외 1개 주소	배전반, 수전반, 계기함	214-283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중부전기	최미옥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729-11 외 1개 주소	배전반, 수전반, 계기함	214-2377	
(주)라인	이은자	청원군 내수읍 충청대로 729-11 외 1개 주소	배전반, 수전반, 계기함	214-1291	
국제산전(주)	배서련	청원군 북이면 신대 석성로 353	수배전반	212-7791	
보성산전	김성환	청원군 오송읍 외옥제방길 5-16	배전반, 전기자동차제어반		
보광엔지니어링	김경한	청원군 북이면 석성길 58	분전반	213-4290	
일웅테크1공장	장원철	청원군 내수읍 풍정3길 88	배전반	211-1579	
일웅테크2공장	장원철	청원군 내수읍 풍정2길 53	배전반	211-1579	
(주)유노산업	권형안	청원군 오창읍 원리2길 59	합성수지 절연전선	010-4734-1259	
대광	김영애	청원군 강내면 태성1길 75 외 1개 주소	절연전선케이블	232-5232	
(주)아이디조명산업	이현우	청원군 남이면 척산2길 40-11	조명등 기구	267-9007	
(주)대운엘앤씨	홍철한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199번지	LED조명, 일반조명	070-7805-4720	
(주)지인충북지점	민병화	청원군 강내면 태성담연로 111	LED제품	236-6401	
(주)아람전기	강신군	청원군 오창읍 꽃화산1길 32-4	가로등	241-7600	
(주)신화LED	심상기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3-5	LED조명	215-6905	
(주)하나디앤씨	신건식	청원군 남이면 척산화당로 85-13	간판, 광고물	269-0360	
(주)씨티에스	박창순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08-1	LED조명	031-732-0188	
한국아이티닷컴(주)	남만진	청원군 오송읍 상정쌍청로 97	LED교통신호등	236-7211	
(주)생활낙원	김기석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316-9	음이온발생기, 탈취기	225-7077	
(주)생활낙원 2공장	김기석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316-1	음이온발생기, 탈취기	225-7077	
(주)코디조명산업	김종태	청원군 미원초정로 250-29 (미원면)	형광등기구, 가로등주외	212-4924	
(주)코디조명산업	김종태	청원군 남이면 사동구암로 370	가로등기구류, 조명등기구	212-4924	
(주)파인파크	신정우	청원군 가덕면 인차3길 19	LED조명	286-5550	
중부전기	이옥제	청원군 남이면 시목외천로 461 외 3개 주소	발전기, 시추기, 공기압축기	2776662	
베스트롱산업(주)	권후원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30-1	PP, PET, PVC+ACRYL (태양광발전기, 합성섬유)	213-8494	
상용산업조명(주)	신달순	청원군 북이면 팔결신대로 563	램프용안정기, 램프, 가로등플랜트, 가로등, 정압등, 투광등, 가로등주, 유무선원격제어장치	216-6060	
(주)새롭플러스	김용문	청원군 옥산면 오산가좌로 468	자동제어반, 습도계, 압력계, 적산계기	02-704-0704	
(주)프라우텍청주지점	홍세경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1217	각종 LED조명	031-238-2575	
(주)에스앤디인터내셔널	한승희	청원군 남이면 남이의천길 13-8	조명기구, 조명디자인, 가로등 등	260-271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거인	권미정	청원군 남이면 청남로 1823	광고용조명장치, 금속표시판, 가공공작기계	296-3376	
태양전기통신	권세종	청원군 남일면 효촌송암1길 51-3	LED전광판, 방송장비, 네트워크분배기, 전기콘센트	257-4477	
에코 티&티	박상무	청원군 내수읍 화평풍정길 28-10, 협동화 단지 5동 10, 11호	잔반 처리기, 탈취살균기, 슬러지 건조기	213-7787	
(주)다본시스템	김형민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199번지	신호등, 철구조물, 교통신호기기, 안전시스템무선기기	284-0955	
(주)파워온	박덕용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20	절연금속밋케이블	543-2747	
(주)다승아이엔에스	오성환	옥천군 옥천읍 마암로1길 13	가로등	833-0541	
(주)코스모링크	김종우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50-3	절연전선 및 에나멜동선	730-5114	
(주)한성일렉스	김동일	옥천읍 서부로 10-19	변압기	731-4188	
미아전기(주)	정평열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254	전동기구, 방전램프	733-5750	
우방전선(주)	이명섭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48	절연전선, 통신케이블	731-6919	
화목이보일러	문진용	옥천읍 서부로 31	보일러	216-1651	
케이엔피솔루션(주)	박창욱	영동읍 설계리 12-1(영동대)	전기등	744-7301	
대원산업(주)	권선욱	증평군 증평읍 쇠마루1길 26	배전반, 자동제어반	836-4664	
(주)대진라이팅	박창선	진천군 덕산면 석장2길 23 (덕산면, 거성포장)	LED조명기구, 태양광 조명	031-202-2196	
(주)대한하이라이트	김양권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6	배선기구, PVC콤파운드, LED	000-1588-5748	
(주)하이트전력	이병구	진천군 이월면 신척서길 27-21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	011-466-258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변압기공장	박세환	진천군 이월면 중미로 434-27 외 4	변압기, 정제연료유	536-7161	
세진실업	최영노	진천군 이월면 용사길 128-6 외 1	세면기, 휴지통, 컵, 비누곽, 수저통, 욕식의자, 슬리퍼	010-5359-5720	
태송산업(주)	윤성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45-11	컨테이너	533-8077	
한솔라이팅(주)	김치우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	LED조명	530-8516	
(주)세진전기	김정민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00	특고압반, 저압반, MCC반, 분전반	532-3690	
(주)에이씨티	김태엽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320-50	전동기, 발전기	532-9000	
덕산약품공업(주)	고영채, 홍석관, 홍성택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6-18번지	배전반	011-332-6445	
동방전선(주)	이근재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171-2 외 1	절연전선, 전력케이블	533-5401	
리드테크	김한식	진천군 농다리로 34 -27(문백면)	배전반	532-8772	
삼정씨더블유(주)	피성희	진천군 이월면 고등2길 37	절연금속선, 케이블	536-3015	
쓰리이엠(주)	서동수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산 42 외 1	조명등기구	031-404-3813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엠에스와이어	장문석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160	절연선 및 케이블	8784197	
한미전선(주)	성병경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전력케이블, 절연전선, 나동선 등	5366670	
JJT MOON LIGHT	정진택	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20-30	LED 보안등 및 가로등	01020392767	
부강기계공업	조 순 동	괴산군 사리면 화산재로 116	배전반, 엘리베이터 부속품, 철도차량부품	832-1371	
(주)현누리테크놀러지	도희정	괴산군 괴산읍 남산길 35-46	방전램프, 전자식안정기	834-1887	
(주)오렉스테크	배삼선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604-4번지	삼과장EL, FPL등기구, LED STAND		
(주)강산조명	최종관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80번길 108-5	방전램프, 안정기, 가로등기구, 가로등주, 자동점멸기	881-1261	
(주)대경트라움	황성열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1252번길 100	음식물처리기	031-702-6313	
(주)대륙지산전선	임동봉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274-2 번지 외 5개 주소	절연전선케이블	532-1912	
(주)메카포럼	장기남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 230-65	LED 조명등	02-6243-6000	
(주)명성전선	이성환	음성군 금왕읍 금울로 248	절연전선, 케이블선	878-7667	
(주)비추	최선주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146번길 27 외 8개 주소	LED가로등	011-9844-1845	
(주)선보하이텍	김병찬	음성군 맹동면 초금로 126	전기조명장치	881-8887	
(주)세영코퍼레이션	강정환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65번길 65	LED 가로등	032-612-8047	
(주)아크로엔텍	김미경	음성군 대소면 명심이길 38 외 1개 주소	전기온수기, 보일러, 열풍기, 전기레지, 온풍기히터	010-4054-8088	
(주)에스엔케이블	김홍식	음성군 맹동면 두성로 212-3	절연선 및 케이블	883-2081	
(주)에이원전선	이종재	음성군 생곡면 생삼로 283 외 10개 주소	제어용, 전력용, 소맞용 전선	010-9178-2263	
(주)유명	한양호	음성군 대소면 명심이길 34 외 1개 주소	집합선	882-0670	
(주)지오웍스	오기식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89	배전반	02-876-1702	
(주)초록비	김운옥	음성군 소이면 충청대로 1764	음식물쓰레기처리기	872-5401	
(주)한솔전선	전태길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319-1 외 4개 주소	내부도체 절연선, 외부도체, 시스	010-4537-2014	
(주)화신	김인철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1길 60	배전반, 전기규격 박스	877-3611	
국제전기(주)	김봉현	음성군 금왕읍 신개천로 98 외 8개 주소	변압기,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집진장치	883-7751	
넥상스대영(주) 제1공장	강인구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842 외 19개 주소	절연및피복케이블	877-5477	
넥상스대영(주) 제2공장	강인구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842 외 2개 주소	절연선및피복케이블	877-5477	
대성산업	이종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25 외 3개 주소	절연전선케이블, 카드케이블	010-7490-31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선공장	박세환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611 외 2 필지	절연금속선, 케이블	536-0763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동원전선제2공장	최애숙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177-1번지	절연선 및 케이블	877-4077	
벨포스(주)	신 현식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산 49-11 외 5 필지	LED 조명	010-7415-8045	
삼원전선(주)	오승훈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45번길 97 외 6개 주소	절연케이블	882-8121	
삼일변압기(주)	안용길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8	변압기	877-4529	
상진전선(주)	문학순	음성군 금왕읍 초금로 457-30 외 5개 주소	합성수지 절연전선	882-2700	
서울전선(주)	이충열	음성군 삼성면 명심이길 27-20 외 1개 주소	절연선 및 케이블	879-7200	
서울전선(주)제2공장	이충열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 249번길 62-3 외 8개 주소	절연선 및 케이블	879-7200	
서진하이텍	김승란	음성군 생곡면 오신로 312-23	교통신호등	878-1136	
선우전기(주)	임형규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44-1번지	변압기	877-2955	
에스라이팅(주)	남궁종규	음성읍 한불로69번길 30	LED조명기구, 가로등, 등기구	031-287-0707	
에이스이엔텍	김상운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산 79 외 1 필지	무동력자가발전기	010-8914-0002	
영운산전	라영수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56 외 1개 주소	전기 제어함	019-366-1219	
영흥전자	배영안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11-35번지 외 3개 주소	LED 가로등	011-326-3529	
유명(주)	한양호	음성군 대소면 성분리 381-37번지	집합선	882-0670	
창산전력(주)	신창섭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47	가로등	881-2271	
태일전선(주)	권도중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234번길 89 외 1개 주소	연동, 석동 집합선	877-6151	
EQ바스	박현순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304-15 외 12 필지	비데일체형 양변기	02-2601-0141	
SMS cable	이후덕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352번길 16-25 외	절연선 및 케이블	010-8980-5085	
(주)레드썬	노재하	단양군 대강면 대강농공길 20 (두음리)	배전반	422-4531	

기타기계 및 장비

대일산업	전운배	청주시 흥덕구 남지로55번길 2-10 (미평동)	덕트, 송풍기	291-8055	
생동엔지니어링(주)	구인희	청주시 상당구 사천로 179 (사천동)	수증모터, 펌프	213-4960	
(주)삼진엘리베이터	윤희택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95-7번지	엘리베이터	286-8439	
(주)새롬정보기술	허창립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대화원산공동기술연구원 942호	중앙집중화 원격제어시스템	223-8006	
(주)에스아이티	홍진성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개신동)	배전반 및 케이블	264-4974	
(주)오션엔지니어링	한재익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송점동) 1510호	공기조화장치	236-6400	
(주)이노스	조영일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214번길 38-28 (정북동)	열교환기, 정글박스	267-200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주)티이엔	김태원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2번길 37-1 (봉명동)	히트펌프, 제습기	279-7058	
(주)푸드에너지	이태숙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1, 녹색산업진흥원301호 (복대동)	음식물쓰레기처리기	277-8500	
충청호이스트크레인	안병호	청주시 흥덕구 성화로69번길 43-10 (죽림동)	호이스트	236-3093	
한국종합환경	윤두수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150-7 (정삼동)	액체여과기	235-9448	
(주)디에스메탈	최명성	충주시 충주산단2로 110	엘리베이터웨이트	857-2250	
블루제이엔씨	김동조	충주시 주덕읍 주덕농공길 32	열교환기	031-997-3037	
옥수산업	이동주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53	소독약품투입기	845-0074	
(주)그린파워텍	김재성	충주시 가금면 감노로 1951	소각로, 가열기	010-494-8360	
(주)벤토피아	이성환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165	송풍기	02-738-1104	
(주)소모홀딩스	윤관중	충주시 엄정면 북부로 2766	조경용콘크리트블럭	02-3450-6822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충주공장	박세환	충주시 산척면 셋강영길 59	소화기	02-2057-2599	
하동기업	김지형	충주시 가금면 모곡내동길 133-30	소각로, 자동화기계	855-2512	
우리개발산업	김문자	충주시 노은면 신희리 610외8	교통표지판	010-3306-1309	
(주)우리에어텍코리아	한상규 이상용	충주시 대소원 완오리 1153	크린룸장비, 공조장비	041-844-9117	
주식회사 양협	이종건	충주시 신니면 남악길 3	공기조화장치	281-3855	
세아산기	이정숙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11길77-68	호이스트, 크레인	647-6107	
한연산업(주)	장건진	제천시 바이오밸리3로24(양암동)	산업용필터, 여과기	651-6933	
삼지수중펌프	박길순	청원군 옥산면 덕촌덕절길 69-16	원심펌프	260-3241	
대왕로엔지니어링(주)	전상택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68-46 외 2개 주소	산업로, 소각로 및 오염방지기기	02-403-4060	
(주)중부엘리베이터	황인갑	청원군 내수읍 내수도원길 75-13	승강기, 콘베어	214-5900	
(주)원영	설재철	청원군 오창읍 빗화산길 71-7	엘리베이터		
(주)피씨엠솔루션	정홍석	청원군 오창읍 탑리 220 외 2 필지	컨베이어장치 제조, 스킵호이스트 제조, 고가주행크레인 제조	010-7515-0306	
(주)티피에스	유한준	청원군 오송읍 가로수로 171-5	공기조화장치, 닥트제조	233-7283	
청원공조산업	이원호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117	공기조화기구	010-8437-2254	
정도기전	최근환외 1명	청원군 북이면 추학리 32-12	공기조화기	215-8861	
(주)티보맥스	이기호	청원군 현도면 죽암도원로 12-27	송풍기	275-6002	
이노에어	민찬기	청원군 오창읍 성산길 19 외 1개 주소	열교환기, 배기팬, 유인팬, 행거팬	217-7061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한국캠브리지필터(주)	김남조	청원군 오창읍 각리 654-6	공조용 에어필터	215-0291	
(주)지이티(GET)	최광희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 충청대학 창업보육센터 1관 207호	자외선살균기(하수)	221-3060	
금강이엔지(주)	심성수	청원군 가덕면 병암4길 21-9	염소투입기	285-6792	
(주)일성지이	이준홍	청원군 북이면 내추길 15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297-5555	
(주)동양그린	박석화	청원군 내수읍 학평길 71	음식물잔반처리기	283-5537	
(주)우림엔지니어링	변동섭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163	크레인, 특장차부품	234-3105	
태경산업	황태경	청원군 남이면 남이외천1길 70	송풍기, 환풍기, 이앙기, 관리부품	269-0567	
강산엔지니어링	김홍관	청원군 오창읍 꽃화산1길 32-4	집진기, 폐수처리시설	215-0857	
BMS	김미선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87-23 외 2개 주소	증발기, 열교환기	231-4364	
(주)자농원	박노연	청원군 내수읍 학평길 71, (학평리 209, 209-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금속구조물 및 알루미늄창호	215-2278	
(주)정봉	홍의환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길 68-46 외 6개 주소	폐수처리용탱크, 컨베이어장치, 무대장치	225-1100	
우경산업(주)	정태복	청원군 내수읍 학평풍정길 34	호이스트제조, 콘베어	224-4114	
(주)디테크	엄성태	청원군 현도면 시목외천로 273	선별기, 파쇄기, 펄프, 여과기	260-1852	
(주)위텍	장경순	청원군 오창읍 오창가좌4길 79	STS물탱크, 압력측정유량계, 약품투입기, 배전반	04-1621-0801	
태광기계	심효섭	청원군 현도면 청남로 486-1	콘베어, 리프트, 발효기, 소형포크레인		
다물송풍기	김장현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182-24	송풍기	544-2496	
유환엔지니어링(주)	김인호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22	펌프, 모터, 송풍기	543-2101	
(주)정봉	홍의환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326	탈취기, 컨베이어장치	544-9001	
(주)명석	강석명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38-6	호이스트크레인	406-7412	
두일엔지니어링	박영오	옥천읍 서부로 38-6	호이스트크레인	407-2395	
사회복지법인 선아복지재단	신제철	옥천읍 옥천동일로 387-57	PE상수관, PE하수관	731-1860	
(주)에이티앤비	송성범	진천군 이월면 수청길 196	송풍기, 공기정화기	02-2082-7653	
서울샤프중공업(주)	이근우	진천군 덕산면 덕금로 631	집진기, 공기정화기, 보일러보조장치	5305100	
신도이앤씨(주)	남연우	진천군 덕산면 귀농1길 45-3	송풍기	02-419-1516	
엠비이엔지(주)	이남한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485-1번지 외 3	호이스트, H빔, 타워크레인수리, 감속기	537-1502	
유진테크	김탁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산 80-20번지 외 2	외조기, 공조기		
(주)대종프라자	서진대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358 외 1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011-9123-7680	
제일ENG	남기운	진천군 진천읍 장수로 103-3 외 1	환기팬	533-8580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첨단에너지(주)	이후용	진천군 덕산면 석장1길 71 외 9	열교환기	536-9137	
세신기계	김영기	괴산군 칠성면 맹이재로 105	냉각탑제조	832-0645	
유니온텍	함문수	괴산군 사리면 중흥로3길 39-1	제작용 장비(오일필터, 연료필터, 에어필터)	016-514-1849	
화신평조	최현규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349-1	송 풍 기	836-4650	
(주)가람산업	허용무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80-16번지	호이스트	882-3555	
(주)국제	권혁민	음성읍 토계울길 4 외 4개 주소	소화기	872-9630	
(주)농산	김도산	음성군 금왕읍 구개촌길 33	이동식 저온냉장창고		
(주)다몬기연	지해남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0번지 리노삼복사업단지 3블럭	크레인, 산업기계	032-813-3528	
(주)대오정공	홍성조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205 외 3개 주소	호이스트카, 콘도라, 엘리베이터	882-8679	
(주)두인이엔지	권기산	음성군 생극면 송곡길 99-6 외 1개 주소	기체여과기, 공기조화기	881-9888	
(주)부성기연	김길식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86 외 2개 주소	산업용 냉동기	882-6610	
(주)선원	이국희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66	소각로	535-4141	
(주)신성이엔지	이순구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438-38	항온습습기구조재(FFU, EFU, Air-Shower, Clean Room)	879-4338	
(주)에스에스에코텍	박길태	음성군 생극면 대금로 1994	자외선소독설비, 탈취기, 압축기, 크레인	881-9550	
(주)에이케이케이	신현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24번길 88-20 외 5개 주소	액체여과기	883-8422	
(주)영성엔지니어링	김영국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322번길 33-7 외 1개 주소	공기조화기, 에워샤워기	881-6414	
(주)원방테크	강철호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 30번길 32-10	소음기	877-1631	
건안렌탈	김용화, 김윤희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107-10	리프트	881-3434	
대영공조산업	전민수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771번지	송풍기, 닥트기구류	873-3901	
대진플랜트	김명한	음성군 대소면 산내로107번길 64 외 2개 주소	공조기	011-330-8852	
동양리프트(주)	김원섭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381번지	리프트제조	881-8891	
동양리프트(주)	김진복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25 외 7개 주소	리프트 제조	881-8891	
범양공조산업(주)	장종기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77번길 46 외 3개 주소	냉각탑, 공조기, 송풍기	883-7776	
부성기계(주)	이희진	음성군 음성읍 토계울길69번길 44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873-2542	
삼승기계	송영희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974	송풍기, 환풍기	882-8111	
서울냉열(주)	안민환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315	공조기	535-0234	
알리막핵(주)	이동욱	음성군 생극면 임곡길 113	리프트	010-5223-3540	
청남공조(주)	김진홍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315	공조기, 송풍기, 냉동기	537-4723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	비고
청솔이엔지(ENG)	정연봉	음성군 삼성면 삼양로 64-11	크린룸, 크린장비	881-0580	
태광ENG	최병도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667번지	전력케이블, 절연전선류, 통신케이블, 코드및나동선	878-0330	
우성기계	김희정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415 (기동리)	컨베이어 리프트	423-1237	
기타제품					
이랜드체육산업(주)	조석현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로 853-18	운동기구, 어린이조합놀이대	213-9100	
(주)아이디테크	최종국	청원군 낭성면 산성로 1148	허리트위스트밋스태파	2213801	
정미공사	정동호	청원군 내수읍 은곡목방길 80 외 1개 주소	간판, 도로표지판	256-7370	
(유)로드원씨엔씨	김미예	청원군 남이면 부용외천리 1001-1번지	체육시설물, 파고라, 벤치	272-1618	
(주)폴리피아	윤건구	옥천군 동이면 동이농공길 92	어린이 놀이기구	733-1477	
투원시스템(주)	신충식	옥천군 안내면 서대2길 4	놀이터장비	731-1713	
(주)온누리체인	박종화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464-1	건강기구	02-569-5662	

계약심사 실무편람

발행일	2013년 07월	
발행처	충청북도 회계과	
감수	행정국장	강호동
	회계과장	윤충노
편집	계약심사팀장	김태선
편집정리	토목담당	백종현
		오광승
	건축담당	김정민
	물품담당	조효정

